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21
----------	-----

2023년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3. 5. 30.
2. 제안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회부일자 : 2023. 6. 1.
4. 상정일자 :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3. 6. 26.)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23. 6. 27.)
 - 승인

Ⅱ. 제안설명의 요지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재정활동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 총괄

- 2022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961억원을 포함하여 14조 9,295억원임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8.7%인 14조 7,382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5,358억원(20.8%)이 증가하였고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5.8%인 12조 8,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660억원(11.9%) 증가함
 - 세계잉여금은 1조 9,271억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6,021억원과 보조금 반납예정액 36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조 3,214억원으로, 전년 대비 8,632억원(188.4%) 증가함
 -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주된 사유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 2조 5,358억원의 세입 증가와 1조 663억원의 내부유보금 발생이 주요 원인임

나. 세입결산

- 세입 결산액은, 세입징수결정액 14조 7,504억원 대비 99.9%인 14조 7,382억원이고, 미수납액은 111억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1억원임
- 세입재원의 구성비율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및 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 등이 93.5%,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이 5.2%, 자체수입이 1.3%, 교육청 전체 예산 중 90% 이상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열악한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음

다. 세출결산

- 세출 결산액은 12조 8,110억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021억원이며, 집행잔액은 1조 5,127억원임
- 정책 사업별 결산액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5조 7,844억원, 평생교육 부문이 370억원, 교육일반 부문이 1조 7,788억원 예비비 433억원, 인건비 5조 1,675억원임
- 세출 성질별 결산액은 인건비와 전출금 등이 70.0%로 8조 9,540억원, 내부거래는 11.5%로 1조 4,729억원, 이전지출은 10.1%로 1조 2,966억원, 그 외 물건비, 자본 및 상환지출, 예비비 및 기타 8.4% 1조 876억원을 지출함
- 집행잔액은 인건비 629억원, 물건비 687억원, 이전지출 519억원, 자본지출 830억원, 전출금 등 1,563억원, 예비비 및 기타 1조 899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인 1조 5,127억원이 미집행됨

-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내부유보금(예산절감액) 1조 663억원, 지출잔액이 2,640억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63억원,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466억원, 그 외 예비비, 낙찰차액이 395억원임

라.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 예산 이용은 26억원으로 초등교원 명예퇴직수당 예산 부족분 충당으로 총 1건 이용함
- 예산 전용은 546억원으로, 코로나19 대비 자가검사키트 확보를 위한 물품 일괄 구매 등으로 총 51건을 전용하였고
- 예산 이체는 786억원으로, 2022. 1. 1. 교육시설관리본부로의 사립학교 시설사업 업무 이관과 2022. 3. 1.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등으로 총 35건을 이체함

마. 다음연도 이월액

- 다음연도 총 이월액은 38개 세부사업에 6,021억원으로, 명시이월액은 3,259억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762억원임

바. 공유재산 및 물품

- 2022회계연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31조 8,051억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405억원이 증가하였고,
- 보유 정수물품 총액은 758억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76억원이 감소함

사.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채권 총액은 2022년도말 현재 2,012억원으로, 2021년도말 대비 141억원이 감소하였고,
- 채무 총액은 2022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음

아. 재무제표

- 재정상태표의
 - 자산은 전년 대비 2조 3,582억원이 증가된 19조 1,959억원이고,
 - 부채는 전년 대비 567억원이 감소된 5,571억원이며,
 - 순자산은 전년 대비 2조 4,149억원이 증가한 18조 6,387억원이고,
- 재정운영표의
 - 수익은 전년 대비 1조 7,917억원 증가된 13조 8,822억원이며,
 - 비용은 전년 대비 7,066억원 증가된 11조 4,673억원으로,
 - 운영차액은 2조 4,149억원임

자. 성과보고서

- 성과계획서 상의 88개 성과지표 중 82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전년 대비 7.8% 증가된 93.2%의 달성률을 거두었음

차. 성인지 결산서

- 성인지사업 36개의 지표 중 22개 지표의 목표가 달성되어, 목표 달성률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61.1%의 달성률을 거둠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경위

-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3년 5월 30일 제출한 것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2022회계연도 결산 개요

- '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최종예산액은 14조 6,333억 3,2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1조 8,152억 9,200만원) 보다 23.9%, 2조 8,180억 3,900만원 증가한 것임
 - 최종예산액 14조 6,333억 3,200만원은 당초 본예산(10조 5,886억 3,500만원), 간주처리분(2,603억 1,100만원), 추가경정예산증액조정분(3조 7,843억 8,400만원)을 합한 것이며,
 - 최종예산액과 직전회계연도 이월액(2,961억 2,500만원)을 합한 '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직전회계연도(12조 1,624억 4,700만원) 보다 22.8%(2조 7,670억 900만원) 증가한 14조 9,294억 5,700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직전회계연도(12조 2,023억 9,600만원) 보다 20.8%, 2조 5,357억 8,100만원 증가한 **14조 7,381억 7,700만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직전회계연도(11조 4,450억 200만원) 보다 11.9%, 1조 3,660억 4,100만원 증가한 **12조 8,110억 4,300만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직전회계연도(7,573억 9,400만원) 보다 154.4%, 1조 1,697억 3,900만원 증가한 **1조 9,271억 3,400만원**임

〈표 2-1〉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잉여금 (A-B)	결산상잉여금 세부내역
2022	14,929,457 (2022최종) 14,633,332 (2021이월) 296,125	14,738,177 (98.7)	12,811,043 (85.8)	1,927,134 (12.9)	채 무 상 환 - 명 시 이 월 325,906 사 고 이 월 276,237 계 속 비 - 보조금반납액 3,559 순세계잉여금 1,321,430

※ ()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3. 세입결산

(1) 세입결산 총괄

- 세입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재원구분에 따라 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채 및 이월금 등으로 구성됨
- '22회계연도 세입결산액(실제 수납액)은 14조 7,381억 7,700만원으로 예산현액(14조 9,294억 5,700만원) 대비 △1,912억 7,900만원 부족 수납된 것이나, 징수결정액(14조 7,503억 9,200만원)과 비교하면 △122억 1,500만원 부족 수납된 것으로

〈표 3-1〉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예산현액대비 수납액(C-A)	징수결정대비 수납액(C-B)
14,929,457	14,750,392	14,738,177	△191,279	△12,215

- 110억 9,400만원이 미수납 되고, 11억 2,000만원이 불납결손되어 14조 7,381억 7,700만원이 실제수납된 것으로 제출됨

〈표 3-2〉 세입결산 중 미수납 현황(2022~2020)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비율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액비율
2022	14,750,392	14,738,177	1,120	11,094	99.9	0.08
2021	12,216,797	12,202,396	139	14,261	99.8	0.12
2020	11,295,434	11,281,083	110	14,239	99.8	0.13

- 재원별 세입결산액은 이전수입 93.5%, 기타(전년도이월금, 금융자산회수) 5.2%, 자체수입 1.3% 순으로 구성됨

〈표 3-3〉 재원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결산액	
			금액(C)	구성비 ^{주1)}
합계	14,929,457	14,750,392	14,738,177	100.0
이전수입	13,984,883	13,773,118	13,773,118	93.5
기타	767,464	768,294	768,294	5.2
자체수입	177,109	208,980	196,765	1.3

※ 주1) 세입결산액(14조 7,381억 7,700만원)에 대한 구성비

(2) 이전수입

- 의존재원인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지방세에 대한 징수권이 없는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이전수입이 주된 세입원임
- '22회계연도 **이전수입** 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93.5%, 13조 7,731억 1,800만원으로 예산현액(13조 9,848억 8,300만원) 보다 △2,117억 6,500만원 감수납된 바,
 - ①**중앙정부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감액교부에 따라 예산현액 보다 △147억 4,600만원 감수납되고,
 - ②**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및 담배소비세전입금 감액교부 등에 따라 예산현액 보다 △1,966억 6,100만원이 감수납되었으며,
 - ③**기타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 7,000만원 증가, 자치단체간이전수입 △4억 2,700만원 감소 등의 사유로 예산현액보다 △3억 5,700만원 감수납된 것임

〈표 3-4〉 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결산(수납)액		예산현액 대비	
			금액(C)	구성비 ^{주1)}	증감액 (C - A)	수납률 (C/A)
합계	13,984,883	13,773,118	13,773,118	93.5	△211,765	98.5
중앙정부이전수입	8,669,935	8,655,189	8,655,189	58.7	△14,746	99.8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295,477	5,098,816	5,098,816	34.5	△196,661	96.3
기타이전수입	19,469	19,112	19,112	0.1	△357	98.2

※ 주1) 세입결산액(14조 7,381억 7,700만원)에 대한 구성비

① 중앙정부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및 특별회계전입금으로 구성됨
- '22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중앙정부이전수입**은 8조 6,551억 8,9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의 58.7%를 차지하는 바,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된 것이나 당초 계획한 예산액(8조 6,699억 3,500만원) 보다 △147억 4,600만원 부족수납된 것임

〈표 3-5〉 중앙정부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결산(수납)액		예산현액대비	
				금액(C)	구성비 ^{주1)}	증감액 (C-A)	수납률 (C/A)
합	계	8,669,935	8,655,189	8,655,189	58.7	△14,746	99.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007,304	8,019,376	8,019,376	54.4	12,072	100.2
	보통교부금	7,589,589	7,589,589	7,589,589	51.5	0	100.0
	특별교부금	255,397	267,469	267,469	1.8	12,072	104.7
	증액교부금	162,317	162,317	162,317	1.1	0	100.0
	국고보조금	99,231	90,412	90,412	0.6	△8,819	91.1
	특별회계전입금	563,400	545,400	545,400	3.7	△18,000	96.8

※ 주1) 세입결산액(14조 7,381억 7,700만원)에 대한 구성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보통교부금**은 당초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5조 6,465억 3,100만원)과 지난 '22년도 보통교부금 추가분(1조 3,142억 9,500만원) 및 정산분(6,287억 6,2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7조 5,895억 8,900만원) 전액을 수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22년 2월, 교육부가 보통교부금(3,945억 5,800만원)을 추가 확정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2년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통교부금 확정액중 506억 2,800만원을 보통교부금 증액분으로 편성하여 '22년 8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나머지 3,439억 2,900만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바 있음

〈표 3-6〉 2022회계연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증감액 세입 편성 내용

(단위 : 백만원, %)

예 정 교 부	확 정 교 부		증 감 액
'22년도 본 예산	계	'22년도 1회 추경액 편 성 액	'22년도 2회 추경액 편 성 액
5,251,973	394,558	50,628	343,929
	(100.0)	(12,8)	(87.2)

- 교육부의 확정 교부통지에 따라 보통교부금 증액분(3,945억 5,800만원)이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확정교부된 세입예산을 2회로 나누어 편성한 것은 예산부서의 편의에 따라 세입예산에 즉시 계상하지 않아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에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예산총칙중 “동일 회계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로 명시된 교부금의 편성시기를 관련 법령에서도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로 수정한 바 있어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특별교부금**은 예산현액(2,553억 9,700만원) 대비 120억 7,2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연도말 교부로 인하여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증액교부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에서 지방교육 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외 별도로 교부하는 재원으로 '22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요경비중 국고부담분을 교부한 것인 바, '22년도 본예산을 통하여 확정된 세입예산액 1,623억 1,700만원 전액이 전입된 것으로 확인됨
-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992억 3,100만원) 보다 △88억 1,900만원 부족 수납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우선확정(756억 8,100만원) 하였으나, 교육부가 '22년 9월과 10월 '22년도 교부액을 668억 6,200만원으로 확정하여 △88억 1,900만원이 부족 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특별회계전입금**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정부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교부되는 전입금으로, 교육부가 5,563억 4,000만원으로 확정통보함에 따라 '22년 8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며, '22년 8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에도 70억 6,000만원이 우선확정되었으나,
 - 교육부가 '22년 10월,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사업의 집행현황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보육료를 △180억원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통보한 바, 기정예산을 경정할 필요가 있었으나 '22년 8월 이후 추가적인 추경편성이 없어 세입예산액을 감액조정하지 못함에 따라,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분만큼 이른바, ‘장부상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교부액과 연동되는 세출사업에서도 그만큼의 ‘재원없는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결산상 불용규모만 확대시킨 사례로 사료됨

②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되는 바,
- '2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결산액은 5조 988억 1,600만원으로 예산현액(5조 2,954억 7,700만원) 보다 △3.7%, △1,966억 6,100만원 감수납된 것임

〈표 3-7〉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결산(수납)액		예산현액대비	
			금액(C)	구성비 ^{주1)}	증감액 (C-A)	수납률 (C/A)
합 계	5,295,477	5,098,816	5,098,816	34.5	△196,661	96.3
법정이전수입	4,846,661	4,651,503	4,651,503	31.6	△195,158	96.0
지방교육세	2,224,856	2,034,548	2,034,548	13.8	△190	91.4
담배소비세	281,201	266,448	266,448	1.8	△14,752	94.8
시도세	2,211,743	2,211,743	2,211,743	15.0	0	100.0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995	7	7	0.0	△1,987	0.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02,609	114,499	114,499	0.8	11,890	111.6
교육급여보조금	9,219	9,219	9,219	0.1	0	100.0
무상교육경비전입금	15,033	15,033	15,033	0.1	0	100.0
비법정이전수입	448,816	447,313	447,313	3.0	△1,503	99.7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79,924	278,420	278,420	1.9	△1,503	99.5
기초자치단체전입금	168,892	168,892	168,892	1.0	0	100.0

※ 주1) 세입결산액(14조 7,381억 7,700만원)에 대한 구성비

- 법정이전수입의 경우, 결산액은 4조 6,515억 300만원으로 예산현액(4조 8,466억 6,100만원) 보다 △1,951억 5,800만원이 부족수납된 것으로

-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서울시의 당초 내시액(2,812억 100만원) 보다 △147억 5,200만원 감액교부된 것으로 확인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교육부의 당초 내시액(1,026억 900만원) 보다 118억 9,000만원 증액교부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서울시는 담배소비세전입금을 포함하여 '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법정전출금 미정산분 4,413억 4,000만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으로 추가 전출할 것으로 예상됨

〈표 3-8〉 2022회계연도 서울시 법정전입금 미전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편성액 (A)	실 전 입 금 (B)	서울시 세입결산액 (C)	미 전 입 액 (B-C)
합 계	4,717,800	4,512,739	4,954,079	△441,340
지방교육세전입금	2,224,856	2,034,548	2,162,165	△127,616
담배소비세전입금	281,201	266,448	288,880	△22,431
시 세 전 입 금	2,211,743	2,211,743	2,503,034	△291,290

○ 아울러 **비법정이전수입**에 대한 결산액은 4,473억 1,300만원으로 예산현액(4,488억 1,600만원) 보다 △15억 300만원 감수납된 것으로

- 지난 '22년 10월, '21학년도 학교 시설 개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및 시설보수비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개방실적이 저조하여 시설보수비 지원금액(7억 8,500만원)이 당초 예산편성액(21억원) 보다 △13억 1,500만원 감액교부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례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미 지난 '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시 동일 사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으나, '22회계연도에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된 바,

- 회계연도 종료에 임박한 11월, 교부금액이 확정되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예산액을 감액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한계로 동일 사례가 반복되는 것으로 검토되나, 정산분이 없는 이전수입의 경우에는 회계연도중 가급적 실제 교부액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 ‘교부되지 않을 미수납’ 사례를 최소화시켜 결산시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③ 기타이전수입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기타이전수입**은 예산현액(194억 6,900만원) 대비 98.2%, 191억 1,200만원이 수납된 것이나 징수결정액(191억 1,200만원) 전액이 수납된 것임

〈표 3-9〉 기타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결산 (수납) 액		예산현액대비	
				금액(C)	구성비 ^{주1)}	증 감 (C - A)	수납률 (C / A)
합	계	19,469	19,112	19,112	0.1	△357	98.2
	민간이전수입	14,937	15,007	15,007	0.1	70	100.5
	자치단체간이전수입	4,532	4,105	4,105	0.0	△427	90.6

※ 주1) 세입결산액(14조 7,381억 7,700만원)에 대한 구성비

- **민간이전수입**의 경우, 예산현액(149억 3,700만원) 대비 0.5%, 7,000만원이 초과수납된 것으로 확인되며 **자치단체간이전수입**은 예산현액(45억 3,200만원) 대비 △9.4%, △4억 2,700만원이 감수납된 것으로, ①현장 지원자료개발 보급사업 시·도교육청 분담금(9,400만원중 △7,000만원)과 ②유아교육 실태조사 추진사업 시·도교육청 분담금(3억 9,100만원중 △3억 4,600만원) 등이 수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현장지원자료개발 보급사업 시·도교육청 분담금'과 '유아교육 실태 조사 추진사업 시·도교육청 분담금'은 실제 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분담금이 수납된 바,
- 지방자치단체간이전수입이 발생되었음에도 자체수입으로 잘못 징수함으로써, 자치단체간이전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4억 1,600만원이 감수납되었으나, 당초 예산액이 편성되지 않은 특별부과금 및 분담금은 수납액이 4억 1,600만원 발생된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부적절한 세입과목으로 세입조치한 것으로 판단됨

〈표 3-10〉 특별부과금 및 분담금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특별부과금및분담금		0	416,500	416,500
	분담금	0	416,500	416,500

- 동 사례의 경우, 지난 '21회계연도 결산심사시 '2021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국고보조금)을 보통교부금으로, '노동인권프로그램 개발 시·도교육청 분담금'(자치단체간이전수입)을 특별교부금으로 잘못 징수하여 세입과목오류가 발생한 바 있어 세입예산을 세입조치함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22회계연도 결산결과 동일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입예산에 대해 관리를 부주의하게 한 것은 물론 회계질서에도 혼란을 초래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3) 자체수입

① 수납액 관련

- 자체수입은 관련 조례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그리고 그 밖에 행정활동 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 '22회계연도 자체수입 결산결과 예산현액(1,771억 900만원) 보다 11.0%, 196억 5,500만원 증가된 1,967억 6,500만원이 수납된 것이나, 징수결정액(2,089억 8,000만원)보다는 △5.8%, △122억 1,500만원이 부족 수납된 것임

〈표 3-11〉 자체수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 수 결 정 액 (B)	수 납 액		불 납 결 손 액		미수납액 (E)
				금 액 (C)	비 율 (C/B)	금 액 (D)	비 율 (D/B)	
합	계	177,109	208,980	196,765	94.2	1,120	0.5	11,094
교수-학습 활동수입	소 계	1,195	1,118	1,103	98.7	14	1.3	0.3
	기본적교육 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24	31	16	52.9	14	45.9	0.3
	선택적교육 수입 (평생학습수입 등)	1,171	1,086	1,086	100.0	-	0.0	-
행정활동수 입	소 계	4,347	4,691	4,669	99.5	-	0.0	22
	사용료 및 수수료	4,347	4,275	4,252	99.5	-	0.0	22
	특별부과금 및 분담금	-	416	416	100.0	-	0.0	-
자산수입	소 계	22,143	22,474	22,438	99.8	-	0.0	36
	자산임대수입	506	582	546	93.7	-	0.0	36
	자산매각대	21,636	21,892	21,892	100.0	-	0.0	-
이자수입	이 자 수 입	5,607	19,559	19,559	100.0	-	0.0	-
기타수입	소 계	143,816	161,135	148,994	92.5	1	0.0	11,035
	제 재 금 수 입	905	2,100	1,697	80.8	1	0.1	401
	기 타 수 입 등	140,594	145,094	144,968	99.9	-	0.0	125
	지난년도수입	2,315	13,941	2,327	16.7	1,104	7.9	10,508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자체수입 수납액은 직전회계연도(2,083억 3,800만원)보다 △5.6%, △115억 7,300만원 감소된 것으로 검토됨

〈표 3-12〉 2022~2021회계연도 자체수입 수납액 비교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2022 회 계 연 도			2021 회 계 연 도			증 감 수 납 액 (B-D)
		징 수 결 정 액 (A)	수 납 액 (B)	비율① (B/A)	징 수 결 정 액 (C)	수 납 액 (D)	비율② (D/C)	
합 계		208,980	196,765	94.2	222,738	208,338	93.5	△11,573
교수·학습 활동 수입	소 계	1,118	1,103	98.7	826	764	92.5	338
	기본적교육수입 (입학금및수업료)	31	16	52.9	216	154	71.6	△139
	선택적교육수입 (평생학습수입 등)	1,086	1,086	100.0	609	609	100	476
행정활동수입	소 계	4,691	4,669	99.5	3,192	3,171	99.3	1,497
	사용료 및 수수료	4,275	4,252	99.5	3,192	3,171	99.3	1,080
	특별부과금 및 분담금	416	416	100.0	-	-	-	416
자산수입	소 계	22,474	22,438	99.8	3,011	2,829	93.9	19,608
	자산임대수입	582	546	93.7	585	553	94.5	△7
	자산매각대	21,892	21,892	100.0	2,425	2,276	93.8	19,616
이자수입	이 자 수 입	19,559	19,559	100.0	6,265	6,265	100	13,294
기타수입	소 계	161,135	148,994	92.5	190,247	176,109	92.5	△27,115
	제재금수입	2,100	1,697	80.8	1,096	577	52.6	1,120
	기타수입등	145,094	144,968	99.9	175,284	175,192	99.9	△30,224
	지난년도수입	13,941	2,327	16.7	13,866	340	2.4	1,986

- 자체수입중 **교수·학습활동수입**의 경우, 직전회계연도에는 7억 6,400만원이 수납되었으나 '22회계연도에는 11억 300만원이 수납되어 직전회계연도보다 44.4%, 3억 3,800만원 증가된 것으로 제출된 바,
 - '22년 4월, 교육부가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 을 발표함에 따라, '22년 5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학교 일상회복과 교육회복으로 수강료 수입 등을 포함한 평생학습수입이 직전회계연도보다 4억 7,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자체수입의 2.4%를 차지하는 **행정활동수입**은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으로, 직전회계연도(31억 7,100만원)보다 14억 9,700만원 증가된 46억 6,900만원 수납되었고, 자체수입의 11.4%를 차지하는 **자산수입**은 강남교육지원청 관내 토지매각(144억 300만원)에 따라 **자산매각대**가 '21회계연도(22억 7,600만원)보다 861.9%, 196억 1,600만원 증가된 218억 9,200만원으로 확인됨

- 자체수입의 9.9%를 차지하는 **이자수입**은 직전회계연도(62억 6,500만원)보다 212.2%, 132억 9,400만원이 증가한 195억 5,900만원으로, 회계연도중 보유자금 증가에 따른 정기예금 운용 확대 및 '22년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증가 등으로 이자수입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됨

- 자체수입의 75.7%를 차지하는 **기타수입**의 경우, 예산현액(1,438억 1,600만원) 보다 3.6%, 51억 7,800만원 증가된 1,489억 9,400만원이 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표 3-13〉 예금 이자수입 현황(2022~2020)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합 계 (① + ②)		정 기 예 금 ①		기 타 예 금 ②	
	일 평 균 잔 액	총예금이자 (A = B + C)	일 평 균 잔 액	정기예금이자 (B)	일 평 균 잔 액	기타예금이자 (C)
2022	1,319,629	19,559 (100.0)	891,890	15,322 (78.3)	427,739	4,237 (21.7)
2021	961,071	6,265 (100.0)	592,438	3,822 (61.0)	368,633	2,442 (38.9)
2020	831,241	13,910 (100.0)	574,234	13,216 (95.0)	257,006	693 (4.9)

※ ()는 총예금이자에 대한 비율임

②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관련

○ '22회계연도 자체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은 직전회계연도(142억 6,100만원)보다 △22.2%, △31억 6,600만원 감소한 110억 9,4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4〉 자체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징 결 정 액 (A)	수 납 액		불 납 결 손 액		미 수 납 액	
		금 액 (B)	비 율 (B/A)	금 액 (C)	비 율 (C/A)	금 액 (D=A-B-C)	비 율 (D/A)
2 0 2 2	208,980	196,765	94.2	1,120	0.5	11,094	5.3
2 0 2 1	222,738	208,338	93.5	139	0.1	14,261	6.4

〈표 3-15〉 자체수입 미수납액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미수납사유 (미수납액)
				금액 (D-ABC)	미수납률 (D/A)	구성비율	
합계	67,643	55,428	1,120	11,094	16.4	100	
지수난년도료	15	0.8	14	0.3	2.3	0.0	○고등학교 수업료: 363천원
사용료수입	3,959	3,936	0	22	0.6	0.2	○토지 사용료: 22,801천원
수수료수입	315	315	0	0	0.0	0.0	○정보공개 수수료: 2천원
임대료수입	582	546	0	36	6.3	0.3	○토지 임대료: 36,500천원
변상금	1,351	983	0	367	27.2	3.3	○공유재산 변상금: 367,885천원
위약금	292	287	0	4	1.5	0.0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보증금 및 공사 지연배상금: 4,441천원
연체료	321	307	1	12	3.9	0.1	○공유재산연체료: 10,083천원 ○기타연체료: 2,575천원
과태료	134	117	0	16	12.1	0.1	○학원과태료: 16,276천원
그외수입	46,729	46,604	0	125	0.3	1.1	○소송비용: 107,729천원 ○변상금분납이자등: 17,543천원
지수난년도입	13,941	2,327	1,104	10,508	75.4	94.7	○변상금: 6,126,883천원 ○위약금 및 연체료: 2,054,734천원 ○소송비용액: 597,110천원 ○과태료: 357,554천원 ○대지료: 124,396천원 ○분납이자: 101,602천원 ○부당이득금 등: 1,146,393천원

※ 전체 자체수입 항목 중 미수납이 발생한 과목에 대한 현황

- 자체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발생사유를 구분하면, ①채무자재력부족 48억 600만원(43.3%), ②납부자태만 25억 6,600만원(23.1%), ③재산압류중 23억 5,300만원(21.2%), ④기타 12억 5,900만원(11.3%)의 순으로 검토됨

〈표 3-16〉 자체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① 채 무 자 재력부족	② 납 부 자 태 만	③ 재 산 압 류 중	④ 기 타	⑤ 채 무 자 거 소 불 명	⑥ 채 무 자 징 수 유 예
금 액	11,094	4,806	2,566	2,353	1,259	76	32
구 성 비	100.0	43.3	23.1	21.2	11.3	0.7	0.3

- **과년도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은 전체 미수납액의 94.7%, 105억 800만원으로, 납부자 태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장기 미수납 처리되지 않도록 이월된 미수납액을 적극 관리하여 징구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7〉 과년도수입 미수납액 현황(2022~2018)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1	2020	2019	2018
자 체 수 입 미 수 납 액	11,094	14,261	14,239	12,966	13,759
과 년 도 수 입 미 수 납 액	10,508 (94.7)	13,433 (94.1)	11,775 (82.6)	11,859 (91.4)	12,742 (92.6)
연 간 증 감 율	△0.3	0.1	0.0	△0.1	

※ ()는 자체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비율

- 아울러, **불납결손액**은 직전회계연도(1억 3,900만원) 보다 9억 8,100만원 증가된 11억 2,0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지난년도 유치원 입학금 및 지난년도 유치원·고등학교 수업료 1,400만원과 학원과태료 등 지난년도수입이 11억 400만원으로 확인됨

- 직전 회계연도에는 **과년도수입에 대한 불납결손액**이 1억 3,900만원으로 소규모였으나, '22년도에는 ①시효완성 10억 7,000만원, ②무재산 200만원, ③거소불명 등 기타사유가 4,700만원 발생한 것으로 제출된 바,
- 결손처분은 관련 규칙에 따라 시효의 완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써 결과적으로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것이므로 시효완성 직전까지 적극 징구하여야 하며 결손처분시에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결손처분 사례가 감소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18〉 불납결손 사유

(단위 : 천원, %)

구 분	'21년 불납결손액	'22년 불납결손액		사 유 별			
		금 액	구 성 비 율	② 무재산	③ 거소불명	① 시효완성	③ 기 타
계	139,074	1,120,429	100.0	2,540	76	1,070,827	46,985
지 난 년 도 입 학 금	-	5	0.0	-	5	-	-
지 난 년 도 수 업 료	45,610	14,517	1.3	-	71	14,445	-
연 체 료	-	1,320	0.1	-	-	1,320	-
지난년도수입	93,464	1,104,586	98.6	2,540	-	1,055,060	46,985

(4) 지방채

- 지방채의 경우, 「'22년~'26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는 동 기간동안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으며 '22년도 세입예산에 미편성하여 '22회계연도 지방채 현재액은 없음

〈표 3-19〉 지방채 발행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발행액	-	-	-	-	133,440	-	421,065	815,069

(5) 기타

- **기타**는 전년도이월금과 금융자산회수로 구성되는 바, 금융자산회수의 경우 '21회계연도에는 **자체수입**에 포함되었으나, '22회계연도에는 **기타**로 과목 체계를 이동하여 편성한 것임
- '22회계연도 **기타** 결산액은 7,682억 9,400만원으로 예산현액(7,674억 6,400만원) 보다 0.1%, 8억 3,000만원 증가된 것으로 확인됨

〈표 3-20〉 기타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결산(수납)액		예산현액대비	
			금액(C)	구성비 ^{주1)}	증감(C-A)	수납률(C/A)
기타	767,464	768,294	768,294	5.2	830	100.1
전년도이월금	757,394	757,394	757,394	5.1	0	100.0
금융자산회수	10,069	10,899	10,899	0.1	830	108.2

※ 주1) 세입결산액(14조 7,381억 7,700만원)에 대한 구성비

① 전년도이월금

- '22회계연도 **전년도이월금** 결산액은 세입결산액(14조 7,381억 7,700만원)의 5.1%, 7,573억 9,400만원으로 '21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①순세계 잉여금 4,612억 6,900만원과 ③명시·사고이월액 2,961억 2,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수납 처리한 것임

〈표 3-21〉 전년도이월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결산(수납)액		예산현액대비	
			금액(C)	구성비 ^{주1)}	증감(C-A)	수납률(C/A)
전년도이월금	757,394	757,394	757,394	5.1	0	100.0
① 순세계잉여금	458,208	461,269	461,269	3.1	3,060	100.7
② 보조금사용잔액	3,060	0	0	0.0	△3,060	0.0
③ 이월금	296,125	296,125	296,125	2.0	0	100.0
명시이월금	72,448	72,448	72,448	0.5	0	100.0
사고이월금	223,676	223,676	223,676	1.5	0	100.0

※ 주1) 세입결산액(14조 7,381억 7,700만원)에 대한 구성비

- 전년도이월금중 ②보조금사용잔액은 전년도 국고보조금과 자치단체보조금의 사용잔액인 것으로,

-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사용잔액(13억 8,200만원)과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16억 7,800만원)을 전년도이월금중 ②보조금사용잔액(30억 6,000만원)으로 편성한 바,
- ②보조금사용잔액(3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음에도 '22회계연도 결산결과 보조금사용잔액이 아닌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액 수납함으로써 보조금사용잔액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0원'인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사용잔액(13억 8,200만원)과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16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산결과에는 보조금사용잔액 30억 6,000만원 전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잘못 징수결

정하고 이를 징수한 것으로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기본적인 관계조차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됨

-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잉여금중 이월액과, 보조금실제반납금을 제외한 사실상 여유재원임에도 정부나 자치단체로 반납하여야 할 이른바 ‘정산 의무가 있는 경비’까지 포함시킨 것은 회계질서에 혼란을 초래한 사안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② 금융자산회수

- '22회계연도부터 자체수입에서 기타로 과목을 이동한 금융자산회수는 대여 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반환에 따른 융자금원금회수 92억 4,900만원과 서울교육노조 사무실 임차보증금(4건) 16억 5,000만원이 세입처리된 것으로 확인됨

〈표 3-22〉 금융자산회수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 수 결 정 액 (B)	수 납 액		불 납 결 손 액		미수납액 (E)
				금 액 (C)	비 율 (C/B)	금 액 (D)	비 율 (D/B)	
금	용 자 산 회 수	10,069	10,899	10,899	0.1	830	108.2	-
	용 자 금 원 금 회 수	9,249	9,249	9,249	100	-	-	-
	보 증 금 회 수	820	1,650	1,650	100	-	-	-

4. 세출결산

(1) 세출결산 총괄

- '22회계연도 최종예산은 14조 6,333억 3,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961억 2,5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4조 9,294억 5,7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2조 1,624억 4,700만원) 보다 22.8%, 2조 7,670억 900만원 증가된 것임
- 세출결산 결과 지출액은 12조 8,110억 4,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8%가 집행되어 직전회계연도(11조 4,450억 200만원, 94.1%) 보다 집행률은 △8.3%포인트 감소한 바,
 - 불용액은 1조 5,127억 1,0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보다 1조 944억 5,100만원 증가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의 경우에도 직전회계연도보다 3,060억 1,800만원 증가된 6,021억 4,300만원으로 제출됨

〈표 4-1〉 세출예산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최종예산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 예정액		불용액	
				금액	비율 (D/C)	금액	비율 (E/C)	금액	비율 (F/C)	금액	비율 (G/C)
				(D)	(D/C)	(E)	(E/C)	(F)	(F/C)	(G-F-C D-E)	(G)
2022	14,633,332	296,125	14,929,457	12,811,043	85.8	602,143	4.0	3,559	0.0	1,512,710	10.1
2021	11,815,292	347,154	12,162,447	11,445,002	94.1	296,125	2.4	3,060	0.0	418,259	3.4
증감액	2,818,040	△51,029	2,767,009	1,366,041	△8.3	306,018	1.6	499	0.0	1,094,451	6.7
증감률	23.9	△14.7	22.8	11.9	/	103.3	/	16.3	/	261.7	/

- 부문·정책사업별 세출결산 결과를 검토하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총 지출액(12조 8,110억 4,300만원)의 45.2%, 5조 7,844억 2,2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인건비** 부문에서 총 지출액의 40.3%, 5조 1,675억 3,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교육일반**에서는 총 지출액의 13.9%, 1조 7,787억 5,800만원이 지출되었음

-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정책사업중 지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정책사업은 **보건급식**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498.9%, 9,657억 100만원 증가된 것이나, 관련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무상급식비를 **교육복지**에서 **보건급식**으로 이관한 결과로 검토됨
 - **교육복지**는 무상급식비가 **보건급식**으로 이관됨에 따라 직전회계연도 대비 △45.2%, 6,655억 1,900만원이 감소되었고,
 - **재무활동**은 직전회계연도 대비 270.9%, 1조 1,517억 9,100만원 증가되었으나, 이는 개별 사업별로 편성하였던 기금전출금(1조 4,728억 5,700만원)을 '22회계연도부터 재무활동으로 편성한 결과로 검토됨
 - **직업교육**은 **교수학습지원**으로 통합되어 순감되었고, **인적자원운용**에서 **인건비**가 별도 분리되어 **인적자원운용**은 직전회계연도 대비 △98.8%, 4조 8,831억 1,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인건비**는 5조 1,675억 3,200만원 순증한 것으로 제출되었음

〈표 4-2〉 부문·정책사업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 예정액		불용액	
		금액 (B)	비율 (B/A)	구성비 주1)	금액 (C)	비율 (C/A)	금액 (D-ABC)	비율 (D/A)		
합계	14,929,457	12,811,043	85.8	100.0	602,143	4.0	3,559	0.0	1,512,710	10.1
유아 및 초중등교육	6,656,090	5,784,422	86.9	45.2	573,484	8.6	3,559	0.1	294,625	4.4
인적자원운용	65,020	61,670	94.8	0.5	278	0.4	2	0.0	3,069	4.7
교수학습활동지원	724,790	662,989	91.5	5.2	41,142	5.7	14	0.0	20,643	2.8
교육복지	851,976	807,152	94.7	6.3	4,748	0.6	2,851	0.3	37,223	4.4
보건급식	1,273,668	1,159,268	91.0	9.0	29,971	2.4	231	0.0	84,196	6.6
학교재정지원관리	2,268,065	2,249,532	99.2	17.6	0	0.0	0	0.0	18,532	0.8
학교시설여건개선	1,472,570	843,807	57.3	6.6	497,343	33.8	459	0.0	130,960	8.9
평생교육	39,518	37,046	93.7	0.3	752	1.9	0	0.0	1,719	4.3
평생교육	39,518	37,046	93.7	0.3	752	1.9	0	0.0	1,719	4.3
교육일반	1,824,213	1,778,758	97.5	13.9	27,906	1.5	0	0.0	17,548	1.0
교육행정일반	161,948	143,371	88.5	1.1	6,207	3.8	0	0.0	12,370	7.6
기관운영	85,265	58,442	68.5	0.5	21,699	25.4	0	0.0	5,124	6.0
재무활동	1,576,998	1,576,945	100.0	12.3	0	0.0	0	0.0	53	0.0
예비비	1,133,152	43,283	3.8	0.3	0	0.0	0	0.0	1,089,868	96.2
예비비및기타	1,133,152	43,283	3.8	0.3	0	0.0	0	0.0	1,089,868	96.2
인건비	5,276,481	5,167,532	97.9	40.3	0	0.0	0	0.0	108,948	2.1
인건비	5,276,481	5,167,532	97.9	40.3	0	0.0	0	0.0	108,948	2.1

※ 주1) 전체 지출액(12조 8,110억 4,300만원) 대비 해당 부문·정책사업의 구성비율임

〈표 4-3〉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액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 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증감액 (C = A - B)	증감률 (C / B)
	지출액(A)	구성비	지출액(B)	구성비		
합계	12,811,043	100.0	11,445,002	100.0	1,366,041	11.9
인적자원운용	61,670	0.5	4,944,784	43.2	△4,883,114	△98.8
교수학습활동지원	662,989	5.2	741,195	6.5	△78,206	△10.6
교육복지	807,152	6.3	1,472,671	12.9	△665,519	△45.2
보건급식	1,159,268	9.0	193,567	1.7	965,701	498.9
학교재정지원관리	2,249,532	17.6	2,102,014	18.4	147,518	7.0
학교시설여건개선	843,807	6.6	1,254,641	11.0	△410,834	△32.7
평생교육	37,046	0.3	30,528	0.3	6,518	21.4
직업교육	0	0.0	857	0.0	△857	△100.0
교육행정일반	143,371	1.1	128,142	1.1	15,229	11.9
기관운영	58,442	0.5	59,259	0.5	△817	△1.4
재무활동	1,576,945	12.3	425,154	3.7	1,151,791	270.9
예비비및기타	43,283	0.3	92,183	0.8	△48,900	△53.0
인건비	5,167,532	40.3	0	0.0	5,167,532	순증

〈표 4-4〉 정책사업 변경 내역 상세

정책사업('21회계연도까지 적용)

정책사업('22회계연도부터 적용)

구	분
인	적 자 원 운 용
교	수 - 학 습 활 동 지 원
교	육 복 지 지 원
보	건 / 급 식 / 체 육 활 동
학	교 재 정 지 원 관 리
학	교 교 육 여 건 개 선 시 설
평	생 교 육
직	업 교 육
교	육 행 정 일 반
기	관 운 영 관 리
지	방 채 상 환 및 리 스 료
예	비 비 및 기 타



구	분
인	적 자 원 운 용
교	수 학 습 활 동 지 원
교	육 복 지
보	건 급 식
학	교 재 정 지 원 관 리
학	교 시 설 여 건 개 선
평	생 교 육
<	삭 제 >
교	육 행 정 일 반
기	관 운 영
재	무 활 동
예	비 비 및 기 타
인	건 비

< 신 설 >

인 건 비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부훈령 제384호, 2021. 8. 9 일부개정)

[별표3]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개정내용 재구성

- 명칭변경 :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 보건급식, 학교시설여건개선, 기관운영, 재무활동
- 삭제 : 직업교육(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통합)
- 신설 : 인건비(인적자원운용에서 분리)

(2) 불용액

① 불용액(집행잔액) 현황

- '22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현액(14조 9,294억 5,700만원)의 10.1%, 1조 5,127억 1,0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보다 261.7%, 1조 944억 5,000만원 증가된 것으로 검토됨

〈표 4-5〉 불용액 발생 현황 (2022~2020)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2022	14,929,457	1,512,710	10.1	1,094,450 (261.7)
2021	12,162,447	418,259	3.4	117,154 (38.9)
2020	11,255,880	301,105	2.7	19,716 (7.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10102 ('23. 4.28)

- 사업부서별 불용액 발생 현황을 검토하면, 예산담당관 1조 1,906억 700만원 (78.7%), 체육건강문화예술과 786억 9,000만원(5.2%), 교육시설안전과 522억 6,300만원(3.5%), 유아교육과 214억 4,500만원(1.4%) 순서로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검토됨
- 불용액(집행잔액)을 발생사유별로 구분하면, ①**예산절감**이 70.5%, 1조 663억 3,700만원이며 ②**지출잔액**이 17.4%, 2,640억 4,500만원, ③**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6.4%, 963억 3,100만원, ④**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이 3.1%, 465억 7,000만원으로 제출된 바,

〈표 4-6〉 발생사유별 불용액 현황(2022~2020)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예 산 현 액	불 용 액 (집행잔액)	발 생 사 유					
			보 조 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예 산 절 감 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생	낙 찰 차 액	지 출 잔 액	예비비
2022	14,929,457	1,512,710	46,570 (3.1)	1,066,337 (70.5)	96,331 (6.4)	15,981 (1.1)	264,045 (17.4)	23,442 (1.5)
2021	12,162,447	418,259	51,219 (12.2)	-	60,631 (14.5)	14,722 (3.5)	286,124 (68.4)	5,563 (1.3)
2020	11,255,880	301,105	-	-	36,530 (12.1)	-	261,608 (86.9)	2,966 (1.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10102 ('23. 4.28)

- '22회계연도 전체 불용의 70.5%인 **예산절감액**(1조 663억 3,700만)은 지난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삭감한 경비 중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조정한 '내부유보금'으로
 - 관련 기준에 따르면 내부유보금은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집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22회계연도중 추가적인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기편성한 내부유보금은 불용 처리하고, 예산총칙에 따라 '23년도 본예산의 세입예산으로 이입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동 불용 사례의 경우, 불용액의 발생사유를 “예산절감”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이 정하는 “예산절감”은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 내부유보금은 추경을 편성하는 것 이외에는 예산액을 집행기관 스스로 경정할 수 없는 세출과목이기에 예산부서의 의지에 따라 배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예산절감”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제도 해설사례집」의 경우에도 “예산절감”은 주민에게 필요한 부분으로 전환하여 더 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알뜰”, “절약”의 개념에 근접한 것으로 사료되나, 편성된 내부유보금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액을 “예산절감”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용액 발생사유를 과도하게 포장한 사례로 사료됨
 - 더욱이 행정안전부는 관련 기준을 통해 불용액의 발생사유중 “예비비”잔액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고, 내부유보금 또한 예비비에 포함되는 세부사업인 바,
 - 내부유보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세출예산 분류는 물론 결산기준조차 숙지하지 않아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예비비”로 기재되어야 할 사안을 “예산절감”으로 처리한 바,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체육건강문화예술과의 경우,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을 사유로 434억 7,900만원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일 감소에 따른 무상급식비 집행잔액이 주요 원인으로 검토됨
 - 교육시설안전과의 경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을 사유로 258억 1,400만원, **지출잔액** 233억 8,200만원, **낙찰차액** 30억 6,600만원을 불용 처리한 바,
 - 시설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발주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로 인한 낙찰차액과 준공정산에 따른 지출잔액은 발생할 수 있으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을 사유로 한 불용액의 경우, 당초 계획하였던 시설사업의 사전절차 지연 또는 반려, 그린스마트 대상교 선정으로 인한 시설개선사업 취소, 현장실사 결과 사업진행 불가, 학교장 요청으로 인한 사업취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됨

-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여건 변화로 불가피하게 불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변경 등을 사유로 발생하는 불용액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유아교육과의 경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180억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을 사유로 불용처리된 바,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결('22. 8.29) 이후 교육부가 '만 3~5세아 보육료' △180억원을 감액 확정('22.10.12)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동 불용사례는 중앙정부가 전입금 규모를 변경통보함에 따라 이미 편성된 국비를 감액조정 하여야 하나, 추가적인 추경을 통해 감액조정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이른바 '재원없는 불용'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교부되지 않는 국비를 감액조정 하더라도 해당 재원을 다른 사업에서 사용할 수 없어 감추경에 대한 실익이 없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 기 편성된 국비가 회계연도중 교부되지 않는 것이 확실시됨에도 예산액을 감액조정 하지 않는다면 결국 세입결산에는 미수납 처리되고, 세출결산에는 불용액 발생규모가 증가되어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원없는 불용'의 경우에는 회계연도중 적극적인 감추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4-7A〉 사업부서별 불용액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서	예산현액	불용액	구성비 ^{%)}	발생 사유					
				보조금 대응투자 장관채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합계	14,929,457	1,512,710	100.0	46,570 (3.1)	1,066,337 (70.5)	96,331 (6.4)	15,981 (1.1)	264,045 (17.4)	23,442 (1.5)
대변인	5,719	122	0.0	0	0	0	36	85	0
감사관	1,862	408	0.0	0	0	15	74	318	0
총무과	74,784	3,923	0.3	0	0	0	0	3,923	0
정책기획관	9,731	752	0.0	15	0	8	10	718	0
예산담당관	6,618,437	1,190,607	78.7	0	1,066,337	33	0	100,793	23,442
행정관리팀장	3,842	118	0.0	0	0	0	0	118	0
참여협력팀장	178,594	10,104	0.7	2,840	0	1	0	7,263	0
노사협력팀장	564,851	19,010	1.3	0	0	255	0	18,754	0
대외협력팀장	672	179	0.0	0	0	111	0	67	0
교육혁신과	169,705	5,817	0.4	0	0	164	63	5,589	0
유아교육과	658,426	21,445	1.4	0	0	18,003	54	3,387	0
초등교육과	151,220	6,488	0.4	0	0	4	0	6,484	0
중등교육과	383,443	11,163	0.7	0	0	2,645	0	8,518	0

〈표 4-7B〉 사업부서별 불용액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서	예산현액	불용액	구성비	발생사유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평생교육과	36,811	1,667	0.1	0	0	211	158	1,297	0
민주시민 생활교육과	43,569	2,717	0.2	0	0	34	14	2,667	0
진로직업교육과	82,438	475	0.0	0	0	219	74	181	0
특수교육과	35,189	1,027	0.1	0	0	25	17	984	0
체육건강 문화예술과	1,250,963	78,690	5.2	43,479	0	0	575	34,635	0
학교지원과	1,445,845	7,661	0.5	0	0	0	0	7,661	0
교육재정과	37,032	1,834	0.1	236	0	119	0	1,478	0
교육시설안전과	1,170,327	52,263	3.5	0	0	25,814	3,066	23,382	0
미래학교추진단	329,022	13,016	0.9	0	0	11,934	0	1,082	0
동부 교육지원청	93,127	4,396	0.3	0	0	223	330	3,843	0
서부 교육지원청	115,088	4,655	0.3	0	0	2,130	767	1,757	0
남부 교육지원청	172,002	11,509	0.8	0	0	4,736	2,943	3,829	0
북부 교육지원청	142,836	7,234	0.5	0	0	2,990	143	4,099	0
중부 교육지원청	55,904	5,007	0.3	0	0	2,987	1,076	943	0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198,148	4,782	0.3	0	0	2,360	1,190	1,231	0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158,223	6,162	0.4	0	0	507	1,707	3,947	0

〈표 4-7C〉 사업부서별 불용액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서	예산현액	불용액	구성비 ¹⁾	발 생 사 유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약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127,065	5,716	0.4	0	0	2,836	1,639	1,241	0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103,661	3,151	0.2	0	0	1,899	400	851	0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75,958	5,381	0.4	0	0	3,162	0	2,218	0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61,620	1,823	0.1	0	0	26	750	1,046	0
직속기관 ^{주2)}	373,323	23,390	1.5	0	0	12,864	884	9,641	0

※ 주1) 구성비는 전체 불용액(1조 5,127억 1,000만원)중 해당 사업부서의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주2) 직속기관은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시설관리본부, 평생학습관(4개관), 도서관(17개관)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10102 ('23. 4.28)

○ 교육부는 지난 '20년도와 '21년도에 관련 기준을 개정하며 불용액에 대한 정확한 원인파악을 위해 **보조금 반납예정액**과 **집행잔액(불용액)**을 분리한 바, **보조금 반납예정액**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기타지원금을 대상으로 2022년도에 교부된 보조금중 반환(예정)할 금액으로, '22회계연도 결산결과 35억 5,900만원의 보조금 반납예정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보조금 지원사업은 서울시교육청 예산뿐만 아니라 국비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포함하여 편성·심의·의결·집행되고 있어 보조금 미집행 예산을 별도 명시하는 것은 비효율적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고, 보조금 반납금만큼 재정책임이 희석되는 이른바 '불용액에 대한 착시현상'도 발생될 수 있어 재정운용의 책임성이 희석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9〉 보조금 반납예정액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세 부 사 업	보 조 금 반납예정액	발 생 사 유 (재 원)
합	계	3,559	
참여협력담당관	교 육 비 지 원	1,482	입 학 준 비 금 잔 액 (지방 자 치 단 체 보 조 금)
	교 육 급 여 지 원	1,338	교 육 급 여 잔 액 (국 고 보 조 금)
	교 육 복 지 우 선 지 원	30	학 습 공 간 시 설 개 선 계 획 변 경 (지방 자 치 단 체 보 조 금)
교 육 혁 신 과	I C T 활 용 교 육 지 원	1	과 기 정 통 부 A I 선 도 학 교 잔 액 (기 타 지 원 금)
유 아 교 육 과	유 치 원 교 육 여 건 개 선	2	꿈 을 담 은 놀 이 교 실 잔 액 (지방 자 치 단 체 보 조 금)
체육건강문화예술과	각 종 체 육 활 동	5	전 국 소 년 체 육 대 회 훈 련 비 잔 액 (국 고 보 조 금)
	학 교 보 건 관 리	151	학 교 흡 연 예 방 사 업 잔 액 (국 고 보 조 금)
	학 교 급 식 운 영	79	무 상 급 식 잔 액 (지방 자 치 단 체 보 조 금)
	교 육 과 정 운 영 지 원	4	초 등 스포 츠 강 사 연 수 비 잔 액 (국 고 보 조 금)
교 육 시 설 안 전 과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459	꿈 을 담 은 교 실 잔 액 (지방 자 치 단 체 보 조 금)
교 육 연 수 원	지 방 공 무 원 연 수 운 영	2	고 용 노 동 부 교 육 비 지 원 금 잔 액 (기 타 지 원 금)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10102 ('23. 4.28)

②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불용액이 발생한 106개 사업중 7개 세부사업에서 전체 불용액(1조 5,127억 1,000만원)의 21.3%, 3,217억 9,4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검토됨

〈표 4-10〉 불용액 발생 세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주1)}	2 0 2 2 회 계 연 도				2 0 2 1 회 계 연 도				불용액 증감액 (A-B)
	예산현액	불용액(A)	불용률	구성비 ²⁾	예산현액	불용액(A)	불용률	구성비 ²⁾	
합 계	8,006,064	321,794	4.0	21.3	7,242,409	244,750	3.4	58.5	77,044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1,255,580	122,237	9.7	8.1	970,832	54,904	5.7	13.1	67,333
교원인건비	3,839,290	77,757	2.0	5.1	3,738,043	104,172	2.8	24.9	△26,415
학교급식운영	917,637	43,509	4.7	2.9	717,735	48,679	6.8	11.6	△5,169
학교보건관리	187,680	30,559	16.3	2.0	86,048	549	0.6	0.1	30,010
누리과정지원	567,412	18,360	3.2	1.2	585,881	13,090	2.2	3.1	5,269
교육공무직원 인 건 비	482,747	16,684	3.5	1.1	426,402	5,507	1.3	1.3	11,178
학교운영비 지 원	755,716	12,685	1.7	0.8	717,466	17,846	2.5	4.3	△5,169

※ 주1) 불용액 100억원 이상 세부사업으로 한정함

주2) 내부유보금, 예비비 불용액은 제외함

주3) 2022회계연도 총 불용액(1조 5,127억 1,000만원) 대비 세부사업의 불용액 비율임

주4) 2021회계연도 총 불용액(4,182억 5,900만원) 대비 세부사업의 불용액 비율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10102 ('23. 4.28)

1) 인건비

- 인건비중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한 3개 세부사업인 ①**교원 인건비**, ②**지방공무원 인건비**, ③**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전액 **지출잔액**을 사유로 전체 불용액(1조 5,127억 1,000만원)의 6.7%, 1,013억 3,6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제출하였음

〈표 4-11〉 발생유별 불용액 현황(인건비)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불 용 액	발 생 사 유						
			보조금대응 투자정산 잔액	예 산 절감액	계획변경 등집행사 유미발생	낙찰 차액	지 잔	출 액	여비
합 계	4,842,396	101,336	-	-	-	-	101,336	-	
교원인건비	3,839,290	77,757	-	-	-	-	77,757	-	
지방공무원 인 건 비	520,359	6,893	-	-	-	-	6,893	-	
교육공무직원 인 건 비	482,747	16,684	-	-	-	-	16,684	-	

※ 불용액 50억원 이상 세부사업으로 한정함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10102 ('23. 4.28)

- 예산담당관 소관 **교원 인건비**는 예산현액(3조 8,392억 9,000만원) 대비 2.0%, 777억 5,7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직전회계연도(불용액 1,041억 7,200만원)보다 △264억 1,400만원 감소된 것임

〈표 4-12〉 교원인건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본예산액 (A)	추경증액 ^{주1)} (B)	변경사용 (C)	예산현액 (D=A+B+C)	집행액 (E)	불용액 (F=D-E)	불용률 (F / D)
합	계	3,841,405	△1,975	△140	3,839,290	3,761,532	77,757	2.0
	보수	2,997,177	-	-	2,997,177	2,944,674	52,502	1.8
	법정부담금	695,277	-	△2,600	692,677	670,836	21,841	3.2
	명예퇴직수당	97,200	△400	2,600	99,400	96,737	2,662	2.7
	맞춤형복지비	51,750	△1,575	△140	50,034	49,284	750	1.5

※ 주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22. 8.29) 증·감액사유

- 초등 교원 2022년 8월말 명예퇴직수당 부족 예상액 26억원 증액
- 중등 교원 2022년 8월말 명예퇴직수당 불용 예상액 △30억원 감액
- 맞춤형복지비 중 전통시장상품권 복지항목 과다계상액 △15억 7,500만원 감액

- 교원 인건비 중 **보수**는 예산현액 대비 1.8%, 525억 200만원이 불용되었고, **법정부담금**은 예산현액 대비 3.2%, 218억 4,100만원이 불용된 바,

- 공무원 인건비의 특성상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예산편성 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대상인원 및 보수액의 차이가 있어 소요예산 산출에 한계가 있다고 하나, 이미 지난 '22년 10월, 재정집행 중간점검을 통해 인건비가 대규모 불용되는 것을 예상한 것으로 확인됨
- 더욱이 관련 기준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재정집행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중간점검결과 집계된 불용 예상액을 적극적으로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인 '22년 9월에 이르러서야 「'22회계연도 재정집행 중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재정집행 중간점검의 취지를 사실상 반감시킨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교원 인건비 중 초등교육과 소관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2.7%, 26억 6,2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 '22년도 본예산 편성시 전년도 수요조사에 근거하여 초등교원 명예퇴직 인원을 462명으로 예상하였으나, 명예퇴직 희망자 조사결과 516명(상반기 407명, 하반기 109명)이 명예퇴직을 희망함에 따라
 -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26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22년 7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22년 8월, 추가경정 예산이 의결('22. 8.29)된 바,
 - '22년 8월31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자 예산총칙에 따라 교원 인건비 중 **법정부담금** 26억원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이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초등교원 명예퇴직수당을 이미 '22년 8월26일 예산의 이용을 통해 지급하였기에 추경예산 확정('22. 8.29) 전까지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요청된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26억원을 삭감(철회)할 필요가 있었으나,
 - 예산조정을 요청하지 않아 추경증액분 26억원 전액이 의결과 동시에 사실상 불용을 확정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예산담당관 소관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예산현액(5,203억 5,900만원) 대비 1.3%, 68억 9,3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직전회계연도 불용액(110억 2,200만원) 보다 △41억 2,900만원 감소한 것임

〈표 4-13〉 지방공무원인건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본 예산액 (A)	추경증감액 ^{제)} (B)	변경사용 (C)	예산현액 (D=A+B+C)	집행액 (E)	불용액 (F=D-E)	불용률 (F/D)
합	계	520,773	△414	-	520,359	513,466	6,893	1.3
	보수	415,135	-	-	415,135	411,708	3,426	0.8
	법정부담금	93,836	-	-	93,836	90,785	3,050	3.3
	명예퇴직수당	3,720	-	-	3,720	3,311	408	11.0
	맞춤형복지비	8,082	△414	-	7,668	7,659	8	0.1

※ 주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22. 8.29) 증·감액사유

- 맞춤형복지비 증 전통시장상품권 복지항목 과다계상액 △4억 1,400만원 감액

- 지방공무원 인건비 중 **보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8%, 34억 2,600만원, **법정부담금**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3%, 30억 5,0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보수 및 법정부담금 불용액(108억 9,300만원) 보다 △44억 1,600만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지방공무원 인건비 중 총무과 소관 **명예퇴직수당**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0%, 4억 800만원이 발생한 바,

- 본예산 편성 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인원을 60명으로 예상하였으나, 명예퇴직계획 시행결과 43명(상반기 27명, 하반기 16명)이 명예퇴직을 희망하여 지출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 관련 법령에 따라 2월말과 8월말에 지급이 확정되는 교원 명예퇴직수당과 달리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은 6월말과 12월말에 확정되므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감액조정이 사실상 한계가 있었을 것이나,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노사협력담당관 소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예산현액(4,827억 4,700만원) 대비 3.5%, 166억 8,4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직전회계연도 불용액(55억 700만원) 보다 111억 7,700만원 증가한 것임

〈표 4-14〉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본 예산액 (A)	추경증감액 ^제 (B)	변경사용 (C)	예산현액 (D=A+B+C)	집행액 (E)	불용액 (F=D-E)	불용률 (F/D)
합	계	499,769	△17,022	-	482,747	466,062	16,684	3.5
	교육공무직원 통합인건비	489,490	△18,442	-	471,047	464,995	16,052	3.4
	맞춤형복지비	10,279	1,420	-	11,699	11,067	632	5.4

※ 주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22. 8.29) 증·감액사유

- 인건비 지원방식을 단가교부에서 실소요액 지원으로 변경하여 △569억 8,600만원 감액
 -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증액 385억 4,400만원 증액
 - 2021년 집단임금협약에 따른 맞춤형복지 건강검진복지점수 신설 14억 2,000만원 증액
-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중 **교육공무직원 통합인건비** 불용액은 160억 5,200만원으로 추경을 통해 불용예상액을 일부 감액조정한 것이나,
-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병가, 질병휴직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 소요재원이 '22년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상황의 다소 둔화로 인해 ①대체근로자 인건비는 66억 7,600만원이 불용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단축수업 등에 대비하여 편성한 ②초등돌봄교실 연장근로수당은 18억 9,600만원 불용되었으며 ③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74억 7,800만원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2) 시설사업비

- 시설사업비중 대규모로 불용액이 발생된 ①**학교시설 환경개선**, ②**학교 신증설**, ③**학교 급식환경 개선** 사업은 전체 불용액(1조 5,127억 1,000만원)의 8.9%, 1,350억 8,4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제출된 바,
 - 불용액을 발생 사유별로 구분하면, ①**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3.2%, 719억 1,000만원, ②**지출잔액**에 따른 불용액이 36.5%, 493억 2,600만원, ③**낙찰차액**이 10.3%, 138억 4,800만원으로 확인됨

〈표 4-15〉 발생사유별 불용액 현황(시설사업비)

(단위 : 백만원, %)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불 용 액	발 생 사 유					
				보조금 대응투자 쟁전액	예 산 절감액	계 획 변 경 등 집 행 사유 미발생	낙 찰 차 액	지 출 잔 액	예 비 비
합 계		1,521,376	135,084 (100.0)	-	-	71,910 (53.2)	13,848 (10.3)	49,326 (36.5)	-
학교시설 여건개선	학교시설 환경개선	1,255,580	122,237 (100.0)	-	-	63,573 (52.0)	13,789 (10.9)	45,284 (37.0)	-
	학교신증설	153,362	6,700 (100.0)	-	-	4,093 (61.1)	205 (3.1)	2,401 (35.8)	-
보건급식	학교 급식 환경개선	112,432	6,147 (100.0)	-	-	4,243 (69.0)	263 (4.3)	1,640 (26.7)	-

※ 불용액 50억원 이상 세부사업으로 한정함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10102 ('23. 4.28)

-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학교시설 환경개선**은 예산현액(1조 2,555억 8,000만원) 대비 9.7%, 1,222억 3,7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 ①**개봉초 본관동 외부창호개선**, ②**가산초 교사동 외부창호개선**의 경우 공사의 종류가 동일한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③태릉고 교사동 바닥개선은 '22년도 본예산으로 10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물량 축소 및 자재변경으로 예산현액의 51.1%, 5억 5,900만원이 불용되었음

〈표 4-16〉 학교시설 환경개선 불용액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서	사업내역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발생사유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공항중교사동 드라이비트해소	2,680	1,258	47.0	공사범위 축소 및 낙찰차액
남부 교육지원청	①개봉초본관동 외부창호개선	2,331	572	24.6	통합사업추진시 집행잔액
남부 교육지원청	②가산초교사동 외부창호개선	1,341	412	30.8	통합사업추진시 집행잔액
동부 교육지원청	③태릉고교사동 바닥개선	1,094	559	51.1	물량 축소 및 자재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서부 교육지원청	구현초외 34교 LED조명임차	1,047	485	46.4	최저가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북부 교육지원청	노원고학점제형 교육공간재구조화	1,042	853	81.8	물량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남부 교육지원청	금천고 공기순환기설치	434	422	97.4	학교요청으로 사업취소

※ 주1) 불용액 4억원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함

주2)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은 제외함 “(3)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에서 별도 검토

○ 학교지원과 소관 **학교 신증설**은 예산현액(1,533억 6,200만원) 대비 4.4%, 67억원이 불용된 것으로 제출된 바,

- ①**대방초 모듈러교실 설치**는 대방초 통학구역내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배치를 위해 모듈러 교실을 추가 설치하고자, '21년도에 45억 5,700만원(본예산 7억원, 추경예산 38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21년 10월, 학부모 반대로 학교 측에서 모듈러교실 설치 취소를 요청하여 설계비(1,900만원)를 제외한 45억 3,800만원을 '22년도로 이월하고, '22년 5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 모듈러교실 설치계획을 취소하여 사업비중 기설치한 모듈러교실의 임차료(5,000만원)를 제외한 38억 3,8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임

〈표 4-17〉 학교 신증설 불용액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서	사업내역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발생사유
남부교육지원청	① 대방초 모듈러교실 설치	4,538	3,838	84.6	학부모 반대로 인한 사업취소
동부교육지원청	(가칭) 양원초신설	8,690	621	7.2	공사 준공에 따른 준공정산금 감액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덕수고이전신설	16,122	574	3.6	공사 준공에 따른 준공정산금 감액

※ 불용액 4억원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함

○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학교 급식환경 개선**은 예산현액(1,124억 3,200만원) 대비 5.5%, 61억 4,7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 ①**중평초 급식실 철거 및 기타개선**은 '22년도 본예산으로 1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 및 사전절차 반대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워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 해당학교는 학생수 1,500명 이상 과밀학교로 조리공간 부족 해소 및 노후된 학생식당 개선이 필요하나, 증축 부지 제한 및 잦은 계획 변경(증축사업→리모델링→증축+리모델링 병행)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바,
 - '22년도에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학교 측에서 리모델링과 수평 증축 병행으로 변경을 희망하여 증축비용(5억 2,8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산 심의 안건을 상정하였음

- 그러나 '22년 7월, 공유재산심의회 안전 제출 자료가 반려(사유 : 기준 면적 초과 및 사업비 재검토, 사전절차 미이행)되었고,
 - 사업 재검토 및 협의 결과, 학교 희망 면적 확보의 한계 및 증축 공간의 한계성 등을 사유로 '22년도 사업은 취소하고, '24학년도 이후로 사업 시기를 재조정 예정인 것으로 확인됨
- ②영훈고 급식실 신축(이전) 및 기타보수는 '22년 3월, 특별교부금으로 8억 9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바,
- 학교에서는 급식실 신축(이전)을 위해 '22년 9월, 안전진단용역을 하고, '22년 12월, 학교급식 시설·설비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나, 회계연도 내 사업추진 기간 부족을 사유로 예산현액 전액을 불용하고, '23년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4-18〉 학교 급식환경 개선 불용액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서	사업내역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발생사유
북부교육지원청	①중평초급식실 철거및기타개선	1,356	1,356	100.0	사전절차(공유재산심의)반려
교육시설관리본부	②영훈고급식실신축(이전)및기타보수	809	809	100.0	사업추진기간부족
교육시설관리본부	중대부고 급식실개선	604	604	100.0	설계검토결과예산부족으로공사진행불가

※ 불용액 4억원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함

- 가인초 급식실 확장 및 학생식당 개선, 역촌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진관고 덤웨이터 및 환기시설 개선의 경우,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30% 이상인 사업으로 검토되는 바,

- 입찰로 인한 낙찰차액과 공사완료 후 미시공분 및 제 경비(각종 보험료 및 수수료) 미사용분을 정산할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 기준에는 일반적인 입찰공사 낙찰률은 88.0%로 일반적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불용률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되나 예산편성시 실제 소요액 보다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 발생규모를 확대한 사례로 판단됨

〈표 4-19〉 학교 급식환경 개선 불용액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서	사업내역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발생사유
북부교육지원청	가인초 급식실 확장 및 학생식당 개선	427	181	42.4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서부교육지원청	역촌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280	120	43.0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서부교육지원청	진관고 본관덤웨어 및 환기시설 개선	279	198	70.9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불용률 30%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함

3) 교육사업비

- 교육사업비중 ①**학교급식운영**, ②**학교보건관리**, ③**누리과정지원** 3개 사업은 전체 불용액(1조 5,127억 1,000만원)의 6.1%, 924억 2,900만원이 불용된 바,
- 불용액을 발생사유별로 구분하면, ①**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이 47.2%, 432억 3,900만원, ②**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이 19.6%, 180억 3,800만원, ③**지출잔액**이 32.7%, 305억 7,700만원, ④ **낙찰차액**이 0.5%, 5억 7,500만원으로 검토됨

〈표 4-20〉 발생사유별 불용액 현황(교육사업비)

(단위 : 백만원, %)

세 부 사 업	예산현액	불용액	발 생 사 유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예 산 절감액	계획변경 등집행사 유미발생	낙 찰 차 액	지 출 잔 액	예 비 비	
합 계	1,672,730	92,429 (100.0)	43,239 (47.2)	-	-	18,038 (19.6)	575 (0.5)	30,577 (32.7)	
①학교급식운영	917,637	43,509 (100.0)	43,239 (99.3)	-	-	-	9	260 (0.6)	
②학교보건관리	187,680	30,559 (100.0)	-	-	38 (0.1)	565 (1.6)	-	29,956 (98.0)	
③누리과정지원	567,412	18,360 (100.0)	-	-	18,000 (98.0)	-	-	360 (1.9)	

※ 불용액 100억원 이상 세부사업으로 한정함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10102 ('23. 4.28)

- **학교급식운영**은 예산현액(9,176억 3,700만원) 대비 4.7%, 435억 9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불용액 중 99.3%가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소관 **무상급식** (432억 3,900만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표 4-21〉 무상급식운영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본예산액	추경 등 증감액 ^{주1)}	예산 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학	교	509,134	408,503	917,637	874,030	43,509	4.7
	무	508,011	406,667	914,678	871,360	43,239	4.7
	상						
	급						
	식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10247 ('23. 6. 8)

- ※ 주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22. 8.29) 2,457억 9,000만원 증액 및 기타예산증감
- 물가상승에 따른 식품관리비(97억 8,800만원) 및 Non-GMO 지원금 서울시 마편성분(25억 8,100만원) 제2회 추경 증액
 - 임금협약에 따른 조리종사원 인건비 인상 및 방역 인력 지원 149억 2,200만원 제2회 추경 증액
 - (1월~8월분 무상급식비)자치구 전입금 890억 4,200만원 및 서울시 전입금 1,321억 9,300만원 제2회 추경 증액
 - 사립유치원 인건비 △26억 4,000만원 감액 편성 및 저소득층평일중식비 22억 4,000만원 감액 후 식품관리비 증액 편성
 - 자치구 및 서울시지원 무상급식비(9월~12월) 편입에 따른 제3회 추경 1,607억 7,700만원 증액

- 무상급식은 공·사립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각종학교포함)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해 교육청과 자치구, 서울시 분담금으로 편성된 재원인 바,

- 학교급식은 예산현액(8,542억 7,900만원)의 4.5%, 390억 8,5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①식품관리비는 코로나19로 인해 단계적 등교 제한과 원격수업 실시에 따른 학교급식 축소 등으로 예산현액(5,472억 2,200만원) 중 4.3%, 234억 5,900만원이 불용되었고, ②조리종사원 인건비는 조리종사원 결원 발생으로 예산현액(2,995억 2,600만원)중 3.8%, 115억 7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③조리종사원 대체인력인건비의 경우, 조리종사원의 연차 축진을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책정하였으나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75억 3,300만원) 중 54.7%, 41억 2,0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 유치원급식은 예산현액(603억 9,900만원)의 7.0%, 42억 3,1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①식품관리비의 경우, 유치원급식 예산 원아수보다 실제 원아수가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예산현액(405억 3,100만원)의 6.3%, 25억 4,3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②인건비는 유치원 영양교사 지원 예산인원수 대비 실제 채용인원 감소로 예산현액(198억 6,800만원)의 8.5%, 16억 8,9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표 4-22〉 학교무상급식비 불용액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 부 내 역	'22회계연도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본예산	추경증감	예산현액				
계	508,011	406,667	914,678	871,360	43,239 ^{주1)}	4.7	
학교급식	소계	473,059	381,220	854,279	815,193	39,085	4.5
	식품관리비	276,508	270,712	547,220	523,761	23,459	4.3
	조리종사원 인건비	189,018	110,508	299,526	288,019	11,507	3.8
	조리종사원 대체인력인건비	7,533	0	7,533	3,413	4,120	54.7
유치원급식	소계	34,952	25,448	60,399	56,167	4,231	7.0
	식품관리비	21,535	18,996	40,531	37,988	2,543	6.3
	인건비	13,417	6,452	19,868	18,179	1,689	8.5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10247 ('23. 6. 8)

※ 주1) 집행잔액 433억 1,800만원 (432억 3,900만원은 불용액, 7,900만원은 보조금반납예정액임)

- 432억 3,900만원이 불용된 **학교무상급식비**의 경우, 당초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제한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바,

- '22년도의 경우, 교육부가 5월 2일부터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을 추진하여 지난 '22년 8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식품관리비로 146억 1,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단체협약에 따른 조리(실무)사 인건비 인상분 74억 4200만원을 증액편성 하는 등 **무상급식** 예산을 245억 5,300만원 증액편성 한 사례가 있음
- 따라서 상반기에는 등교가 제한되어 일정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자 추경을 통해 증액편성한 결과 회계연도말 432억 3,900만원이 불용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지난 '21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등교제한, 원격수업 등 학교급식 축소 등의 사유로 483억 6,700만원 불용된 바 있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예산집행이 곤란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학교보건관리**는 예산현액(1,876억 8,000만원) 대비 16.3%, 305억 5,9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불용액중 98.2%가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소관 **학교감염병관리**(301억 7,400만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표 4-23〉 학교보건관리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본 예산액	추경증감액 ^{제)}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학	교	70,277	117,403	187,680	156,841	30,559	16.3
	학	57,174	111,521	168,693	138,655	30,174	17.9
	교						
	감						
	염						
	병						
	관						
	리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10102 ('23. 4.28)

- **학교감염병관리**는 학교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1,686억 9,300만원) 대비 17.9%, 301억 7,4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표 4-24〉 학교감염병관리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본예산액	추경증감액 [※]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학 교 감 염 병 관 리		57,174	111,521	168,693	138,655	30,174	17.9
	방 역 활 동 강 화	56,597	88,358	144,955	114,898	30,056	20.7
	방 역 활 동 강 화 (특 별 교 부 금)	-	23,163	23,163	23,045	0	0.5

※ 주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22. 4.11)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22. 8.29) 증·감액사유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 및 교육부 전면 등교정책에 따른 선제검사를 위해 제1회 추경 400억원 증액
 - 학교방역인력 지원을 위한 제2회 추경 325억 7,000만원 추가편성, 방역강화를 위한 특별교부금 233억 3,700만원 증액
 -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방역활동강화 특별교부금 4억 3,900만원 증액
 주2) 집행잔액 10억 이상 세세부 사업에 한정함

- '22년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학교보건관리** 40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비용으로 총 732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437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294억 5,6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교육청은 '22년 5월, 교육부의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 선제검사 자율추진 정책에 따라 2학기 오미크론 재확산 및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공급망 불안정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집행잔액을 보유한 것으로 사료되나, 하반기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및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공급망 안정으로 각 학교별 구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동 사업이 집행을 유보한 재원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사료됨

○ 유아교육과 소관 **누리과정 지원**은 예산현액(5,674억 1,200만원) 대비 3.2%, 183억 6,0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표 4-25〉 누리과정 지원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본 예산액	추경증감액 [※]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합	계	525,811	41,600	567,412	549,052	18,360	3.2
	만3~5세유아보육료	320,500	18,688	339,188	321,188	18,000	5.3
	만3~5세아유아학비	201,873	22,337	224,211	224,275	△64	△0.0
	외국국적유아학비지원	1,868	575	2,443	2,465	△22	△0.9
	저소득층유아학비추가지원	1,261	-	1,261	819	441	35.0
	유아학비부대경비	307	-	307	302	4	1.3

※ 주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22. 8.29) 증·감액사유

- 유아 1인당 단가 인상(2만원, 26만원→28만원)에 따른 제2회 추경 만3~5세아보육료 186억 8,800만원 증액
- 유아 1인당 단가 인상(2만원, (공립) 8만원→10만원 / (사립) 26만원→28만원)에 따른 만3~5세 유아학비 제2회 추경 152억 7,700만원 증액
- 교육부 만3~5세 유아학비지원 추가 교부로 인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 70억 6,000만원 증액

- **만3~5세아 보육료 지원**은 예산현액(3,391억 8,800만원) 대비 5.3%, 180억원이 불용된 바, '22년 8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된 이후 교육부가 유아 교육비 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을 당초 3,391억 8,800만원에서 3,211억 8,800만원으로 △180억원 감교부 통지하여 감교부액만큼 “재원없는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표 4-26〉 유아교육비 지원사업 교부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배정액	계	최종교부액	감교부통지액	계
만3~5세아보육료지원	339,188	556,340	321,188	△18,000	545,400
만3~5세아유아학비	217,151		224,211	7,060	

※ 자료근거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4549 ('22.10.12),
 『'22년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사업 조정 결과 알림』

- 그러나 **만3~5세아 유아학비**의 경우에는 상반기 집행결과를 반영하여 70억 6,000만원을 교육부에 추가 요청하고, '22년 10월, 교육부로부터 증액 확정통보를 받아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보다 6,400만원 초과집행한 것으로 확인됨
-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의 경우에도 교육부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 '유치원 재원 외국국적 유아'에 대해 국내 유아와 동일한 수준의 유아학비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보다 2,200만원 초과집행한 것으로 확인됨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만 3~5세 유아학비**와 **외국국적 유아학비**에서 '예산의 초과지출'이 발생된 것이지만 당초 계획인원대비 실제 지원인원에 차이가 있어 세부사업(**누리과정지원**)에 편성된 예산을 개별 사업내용(세세부사업)에 융통하여 '예산의 초과지출'이 아니라고 변명할 여지가 있으나,
 - 세출예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확정되며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 하도록 정하고 있어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바,
 - 관련 기준에 따라 세출예산에 대한 과목구분을 하고 있으나, **예산의 초과지출**이 발생한 **만 3~5세 유아학비**와 **외국국적 유아학비**는 세부사업인 누리과정지원중 개별 사업내용으로 사업별 설명자료에 기재하여 심사·의결된 사안임
 - 따라서 개별 사업내용(세세부사업)에 편성하여 확정된 사안을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조차 통하지 않고, 임의로 융통하는 것은 회계질서문란 행위에 해당되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됨

- 다만, 사업내용(세세부사업)에서 발생한 예산의 초과지출 사례가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하고, 만 3~5세 유아학비의 경우에는 교육부에 반납하여야 하는 이자와 초과지출분을 상계처리하여 최종적으로는 초과지출이 아니라 항변할 여지도 있으나,

- 예산의 초과지출은 '22회계연도에 발생한 사안이며 상계처리는 '23회계연도중 추진될 사안이라는 점에서 각각의 회계연도가 독립됨을 고려할 때 '22회계연도에 발생한 초과지출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은 물론 관련 법령으로 정한 예산의 심의·확정 권한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아울러 의회의 의결결과를 초월하여 예산을 초과지출한 사유 등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문서로써 경위를 제출하고, 법령위반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과 결과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③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은 총 398건, 511억 6,800만원으로 확인되는 바,
 - 4억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28건, 254억 5,300만원으로 ①**학교시설 환경개선**, ②**학교 급식환경 개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검토됨
 - ①**대성고 외 9교 그린스마트스쿨 설계비**는 '22년 5월, 교육부에서 2022년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756억 8,100만원을 내시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성립전예산을 확정하여 '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 '22년 10월, 교육부에서 집행 가능성이 없는 사업비는 당해연도에 교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88억 1,900만원을 감교부한 바, 이미 편성된 국비를 감액조정 하여야 하나 추가적인 추경을 통해 감액조정하지 못하여 '재원없는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②**BTL기본설계용역비**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사업의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비로 '22년도 본예산으로 1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2년 12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 이 부결되어 '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사업이 취소되어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 된 것임
 - ③**개원초 외 22교 LED렌탈사업**은 '22년도 본예산으로 6억 3,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22년 11월, 주관부서인 교육시설안전과가 LED렌탈 용역사업 과업지시서를 변경하고 사업을 발주하였으나, 2회 유찰되어 연도 내 계약이 불가능함에 따라 예산현액 6억 3,2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 ④**신암초 교사동 냉난방보수**는 '21년 3월, 교부된 특별교부금(4억 7,300만원)을 '22회계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나, 학교측에서 석면해체 연계를 사유로 특별교부금을 반납요청하여 전액 불용 처리한 것임
- ⑤**봉림중 교사동 냉난방개선**은 '22년 8월, 추경예산으로 4억 7,000만원을 편성한 것이나, 동 사업은 이미 '21년 10월, 특별교부금(3억 3,000만원)을 통해 '22년 8월, 사업을 완료한 바,
 - 동일한 사업임에도 예산을 중복편성하여 전액 불용처리한 것으로 ⑥**중광초 교사동 냉난방개선**의 경우에도 예산을 중복 편성하여 예산현액 전액을 불용한 것으로 확인됨
- **초당초 본관 소방시설개선**은 '22년도 본예산으로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학교 측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4년도 겨울방학에 공사를 하기 위해 명시이월할 예정이었으나, 명시이월 예산 확정 요구서를 누락하여 전액 불용처리 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행정착오로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한 사례로 판단됨
-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돌발요인에 의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할 수 있으나, '22회계연도의 경우, 예산 중복편성으로 인한 불용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예산편성 전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동일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한정성을 위면하는 결과일 수 있어 향후 유사 편성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표 4-27A〉 예산현액 전액불용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세 부 사 업	사 업 부 서	사 업 내 역	예 산 현 액	불 용 액
1	학교시설환경개선	미 래 학 교 추 진 단	①대성고그린스마트스쿨시설비	2,546	2,546
2	학교시설환경개선	강 서 양 천 교 육 지원 청	가 곡 초 외 7 0 개 교 공 립 학교 화 변 기 교 체	2,257	2,257
3	학교시설환경개선	미 래 학 교 추 진 단	②BTL 기본설계용역비	1,540	1,540
4	학교시설환경개선	미 래 학 교 추 진 단	보성여중그린스마트스쿨시설비	1,498	1,498
5	학교급식환경개선	북 부 교 육 지원 청	중 평 초 급 식 실 철 거 및 기 타 개 선	1,356	1,356
6	학교시설환경개선	성 동 광 진 교 육 지원 청	구남초교사동외부창호개선	1,262	1,262
7	학교시설환경개선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정 의 여 고 급 식 소 샌 드 위 치 패 널 해 소	1,210	1,210
8	학교시설환경개선	강 남 서 초 교 육 지원 청	서일중교사내진보강사업	850	850
9	학교시설환경개선	미 래 학 교 추 진 단	덕성여고그린스마트스쿨설계비	862	862
10	학교시설환경개선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진 명 여 고 교 사 동 체 육 관 천 장 재 교 체	825	825
11	학교시설환경개선	강 서 양 천 교 육 지원 청	가 양 초 내 진 보 강 사 업	817	817
12	학교시설환경개선	강 서 양 천 교 육 지원 청	탑 산 초 내 진 보 강 사 업	815	815
13	학교급식환경개선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영 훈 고 급 식 실 신 축 (이 전) 및 기 타 보 수	809	809
14	학교시설환경개선	미 래 학 교 추 진 단	광 운 인 공 지 능 고 그 린 스 마 트 스 쿨 설 계 비	798	798

〈표 4-27B〉 예산현액 전액불용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세 부 사 업	사 업 부 서	사 업 내 역	예 산 현 액	불 용 액
15	학교시설환경개선	미 래 학 교 추 진 단	한 대 부 중 그 린 스 마 트 스 쿨 설 계 비	737	737
16	학교시설환경개선	미 래 학 교 추 진 단	배 문 고 그 린 스 마 트 스 쿨 설 계 비	729	729
17	학교시설환경개선	미 래 학 교 추 진 단	동 일 중 그 린 스 마 트 스 쿨 설 계 비	706	706
18	학교시설환경개선	성 동 광 진 교 육 지 원 청	덕수고후관동, 급식동및 본 관 동 냉 난 방 개 선	704	704
19	학교시설환경개선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인 창 중 본 관 동 드 라 이 비 트 해 소	657	657
20	학교시설환경개선	강 남 서 초 교 육 지 원 청	③ 개 원 초 외 2 2 교 LED조명임차(재정지원)	632	632
21	학교급식환경개선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중대부고본관급식실개선	604	604
22	학교시설환경개선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총암고별관외부창호개선	525	525
23	학교시설환경개선	강 동 송 파 교 육 지 원 청	④신암초교사동냉난방보수	473	473
24	학교시설환경개선	동 작 관 악 교 육 지 원 청	⑤봉림중교사동냉난방개선	470	470
25	학교시설환경개선	성 동 광 진 교 육 지 원 청	⑥중광초교사동냉난방개선	456	456
26	학교시설환경개선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서울미술고외부창호개선	451	451
27	학교시설환경개선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영락고본관동화장실개선	432	432
28	학교시설환경개선	미 래 학 교 추 진 단	일산여상그린스마트스쿨시설비	422	422

※주1) 예산현액 4억원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

주2) 내부유보금(1조 663억 3,700만원) 불용액은 제외함

(3) 이체 관련

- 예산의 이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중 예산 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예산의 운용부서를 이관하는 것임
- '22회계연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생한 예산의 이체는 총 3건, 785억 6,900만원으로 제출되었음

〈표 4-28〉 회계연도별 이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 0 2 2	2 0 2 1	2 0 2 0
발	생 건 수	3	2	1
이	체 액	78,569	776	12,540

- '22회계연도에 발생한 이체내역을 검토하면, 지난 '21년 8월, 관련 규칙 개정에 따라 '22년 1월 1일 자로 사립학교 시설사업 업무가 교육시설관리 본부로 일원화되어 11개 교육지원청이 '22년도로 이월처리한 '사립학교 시설' 사업예산 118억 3,800만원이 교육시설관리본부로 이체되었고,
 - '22년 3월,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소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 특수교육과, 미래학교추진단이 신설되어,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특수교육사업' 예산(316억 200만원)이 특수교육과로, 교육시설안전과의 '미래학교추진사업' 관련 예산(299억 5,700만원)이 미래학교추진단으로 이체되었으며
 - 체육건강문화예술과의 '보건실현대화산업', '석면안전관리교육', '먹거리생태전환교육', '식생활영양교육장학지도' 업무가 학교보건진흥원으로 이관되어 사업예산(40억 6,300만원)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됨

- '22년 9월,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대외협력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 관리담당관의 '의회협력담당사업'업무와 참여협력담당관의 '국제협력담당사업'업무가 대외협력관으로 이관되어 사업비 6억 7,200만원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됨

〈표 4-29〉 이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이 체 부 서		건 수	이 체 액	이 체 사 유 (이 체 일 자)
준 부 서	받 은 부 서			
합 계		3	78,569	
1 차		1	11,838	'22. 1. 1 자 사립학교 시설사업 업무이관
교육 지원청 재정 지원과	교육 시설 관리 본부		11,838	
2 차		1	66,058	'22. 3. 1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민 주 시 민 생 활 교 육 과	특 수 교 육 과		31,602	- 특수교육과(신설)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3담당까지 : 특수교육, 통합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시설안전과	미래학교추진단		29,957	- 미래학교추진단(신설) - 교육시설안전과 2담당까지 : 미래학교추진, 교육공간기획
학교보건진흥원	정책·안전기획관		104	- 산업재해예방 업무이관
학교보건진흥원	민 주 시 민 생 활 교 육 과		330	- 담당신설: 대안교육 학교박청소년지원 - 업무이관: 학생 정신건강 관련 업무
체육건강문화 예 술 과	학교보건진흥원		4,063	- 학교보건진흥원 환경지원과 신설 - 업무이관: 보건실현대화(보건지원과), 석 면안전관리(환경지원과), 식생활영양교육 장학지도(식생활지원과)
3 차		1	672	
행 정 관 리 담 당 관	대 외 협 력 담 당 관		93	'22. 9. 1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대외협력관 신설)
참 여 협 력 담 당 관			579	

(4) **이용 관련**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예산총칙으로서 이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22년도 예산서 중 「예산총칙」 제8조를 통해 ①공무원 보수, ②기간제근로자, 교육공무직 및 계약직교원 보수 ③세금, 공과금, 배상금, 증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④재해대책비, ⑤반환금, ⑥학교신설비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22회계연도의 경우, 공무원인건비 중 **초등교육과 교원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을 **예산담당관 교원인건비** 법정부담금에서 이용하여 총 1건, 26억원의 이용 사례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됨

〈표 4-30〉 예산의 이용 현황(2022~2020)

(단위 : 건, 백만원, %)

회 계 연 도	2022	2021	2020
건 수	1	0	0
증 감 액	2,600	0	0

- 동 이용 건과 관련하여 '22년도 본예산 편성시 전년도 수요조사에 근거하여 초등교원 명예퇴직인원을 462명으로 예상하였으나, 명예퇴직 희망자 조사결과 516명(상반기 407명, 하반기 109명)이 명예퇴직을 희망한 바,

-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22년 7월 13일 제출하였으나, 추경예산이 8월 29일 의결되어 '22년 8월 31일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데 한계가 있어 예산총칙에 따라 교원 인건비 중 **법정부담금** 26억원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됨
- 동 이용 건은 동일 세부사업인 **교원인건비**중 편성목을 변경하는 것이기에 예산의 전용을 통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될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조직을 달리하는 경우 즉, **예산담당관 교원인건비**를 **초등교육과 교원인건비**로 재원을 이동시킬 경우, 동일 세부사업 간 예산의 변경이라 할지라도 예산의 이용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이용을 통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것과는 별개로 서울시교육청이 '22년 8월 26일 예산을 이용한 이후 '22년 8월 29일 추경예산이 확정되기까지 추경 증액분(초등교육과 소관 **명예퇴직수당** 26억원)을 감액 결정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경정하지 않음으로써 추경으로 증액편성한 초등교육과 소관 **명예퇴직수당** 26억원 전액을 의결과 동시에 사실상 불용으로 확정된 사례가 발생되어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5) 전용 관련

- 예산의 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임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 '22회계연도의 경우, 총 51건, 545억 6,100만원이 전용된 것으로 '22회계연도 예산현액(14조 9,294억 5,700만원)의 0.3% 규모에 해당하나,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면 4건, 411억 8,3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표 4-31〉 예산의 전용 현황(2022~2020)

(단위 : 건, 백만원, %)

회 계 연 도	2 0 2 2	2 0 2 1	2 0 2 0
건 수	51	47	91
전 용 액 (예산현액대비 비율)	54,561 (0.3)	13,377 (0.1)	62,537 (0.5)

- '22회계연도에 발생한 전용 사례(51건, 545억 6,100만원)중 33.2%, 181억 3,600만원이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 자가검진 키트 및 이동형 PCR검사를 위해 **학교보건관리** 운영비로 전용한 것으로
 -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소관 **학교보건관리** 학교회계전출금 등은 교육부의 '22학년도 신학기 전면등교 및 선제검사 정책에 따라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구입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비로 '22년 2~3월까지 4회에 걸쳐 총 181억 3,600만원이 전용된 바,

- 서울시교육청은 '22년 3월,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확정시까지 예산의 전용을 통해 오미크론 확산대응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추진한 것으로 사료됨

〈표 4-32A〉 주요 전용 내역(5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목	예산액	전 용 액		전 용 사 유	전 용 일 자
			감	증		
합 계			△52,033	52,033		
학교보건관	운영비	208	0	1,700	·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신학기 개학 후 발생할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비축하고자 운영비(210)로 전용	2.10
	학교회계 전출금	62,584	△1,700	0		
학교보건관	운영비	1,908	0	12,000	· 3월 전면등교 대비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구매 및 배부, 이동형 PCR검사소 운영을 위해 운영비(210)로 전용	2.24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회계 전출금	45,650	△12,000	0		
학교보건관	운영비	13,902	0	1,045	· 3월 5주차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구입비 부족이 예상되어 운영비(210)로 전용	3.14
	학교회계 전출금	58,495	△1,045	0		
학교보건관	운영비	14,948	0	3,391	· 교육부의 선제검사 계속 지원 결정에 따라 4월 1주차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구입비 확보를 위해 운영비(210)로 전용	3.23
	민간이전	117	△1	0		
	전출금 등	416	△56	0		
	학교회계 전출금	57,449	△3,332	0		

〈표 4-32B〉 주요 전용 내역(5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목	예산액	전 용 액		전 용 사 유	전 용 일 자
			감	증		
정보보안관	무형자산	0	0	700	· 자체 구축·개발 예정이었던 ‘클라우드협업시스템(S/W)’을 조달청 등록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전환하고자 무형자산(440)으로 전용	10.18
	연구개발비	770	△700	0		
학력향상원지	운영비	2,929	0	1,400	· 서울학생(초·중·고) 기초학력 진단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과 컴퓨터기반평가 시스템 구축(용역)을 위해 운영비(210)으로 전용	11. 2
	학교회계전출금	3,801	△1,400	0		
학교도서관운영	학교회계전출금	38,530	0	776	· ‘학교도서관환경개선사업’ 공모 결과 국·공·사립학교수가 변경됨에 따라 국립학교 지원 예산 일부를 공립학교에 지원하고자 학교회계전출금(620)으로 전용	11. 2
	전출금등	1,500	△776	0		
ICT활용교육지원	유형자산	4,362	0	31,020	· ‘학생스마트기기보급’사업 방식을 사업자임대(렌탈)에서 구매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유형자산(430)으로 전용	11. 2
	운영비	32,715	△31,020	0		

○ 그 외에도 '22회계연도에 발생된 전용 사례중 56.9%, 29건은 국·공립 학교회계전출금에 대한 예산과목 변경을 사유로 전용한 것으로

- 중등교육과 소관 **학교정보화** 운영비의 경우 ‘학생스마트기기 「디벗(Digital+벗)」 보급’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지원방식을 **사업자임차(렌탈)** 방식에서 **구매**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총 310억 2,000만원의 유형자산으로 전용한 바,

- '22년 본예산에 편성된 스마트기기 구매 예산 517억 3,400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구매에서 임차로 지원방식을 변경하고자 당초 보다 △207억 1,400만원 감액하고,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나,
 - '22년 10월 말 임차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원방식을 임차에서 구매로 재차 변경을 결정하고, 스마트기기 보급예산을 운영비(목)에서 유형자산(목)으로 전용한 것이 확인됨
 - 이는 '22년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의결된 집행방식(임차)과는 다른 사업방식(구매)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 기기의 지원방식 변화에 따라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급 규모 등 사업의 주요한 내용이 수정되는 것은 물론 향후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규모 또한 수정될 수 있음에도 의회가 예산을 의결한 이후 불과 2개월만에 의결된 지원방식을 달리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에 열거된 전용제한 사안에 해당되어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례로 판단됨
-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 연구개발비의 경우, 자체 개발 예정이었던 '클라우드협업시스템(S/W)'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등록된 협업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전환하기 위해 '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7억원을 무형자산으로 전용한 바,
- 동 사업은 '21년 10월 “협업시스템 시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운영 및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후 '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정보화정책심의 및 추경예산안 심의 시 소프트웨어 자체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심의받았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이후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개발이 아닌 구매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집행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례로 판단됨

-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 예산이 의결된 이후 행정편의 및 용이한 집행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수정하는 도구로 오·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됨

〈표 4-33〉 예산 전용의 제한

- 전용제한 :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등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기준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401), 차입금원금상환(601), 차입금 이자상환(311), 예수금원리금상환(705)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 ※ 단, 차입금원금상환(601)과 차입금이자상환(311)간, 기준인건비 범위 내 편성목간에는 상호 전용 가능
 - ※ 전용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는 전용 불가
 - ※ 시설비 및 부대비(401)의 경우 동일 편성목이라도 단위사업간 또는 단위사업의 다른 세부사업과의 전용 불가. 다만, 동일한 세부사업내 통계목간 상호 변경사용은 가능
 - ※ 「재난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 예산의 경우 이미 전용된 예산이라도 재난재해에 대한 긴급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재전용 가능

주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 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을 할 수 없다.

(6) 명시이월 관련

- 관련 법령은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명시이월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14조 9,294억 5,700만원중 1.85%, 3,259억 6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직전회계연도(724억 4,800만원)보다 2,534억 5,7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제출됨
- 명시이월은 당초 708건, 3,565억 4,400만원을 승인하였으나, '22회계연도 결산결과 677건, 3,259억 600만원을 실제 명시이월한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의회가 당초 승인한 명시이월액(3,565억 4,400만원) 보다 실제 명시이월액(3,259억 600만원)이 감소한 것은 회계연도 종료 직전까지 예산을 집행한 결과로 사료되나, 실제 명시이월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까지 시의회가 심사·의결하게 되는 비효율을 발생시킨 결과일 수 밖에 없어, 향후 필요한 사업에 한정하여 명시이월이 요청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34〉 명시이월 승인 및 결산 결과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승 인 (A)	결 산 (B)	증 감 (B - A)
건	수	708	677	△31
금	액	356,544	325,906	△30,63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406 ('23. 4.21)

- 아울러 '22회계연도의 경우,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회계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경정한 바,

-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감액조정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관성적으로 명시이월을 요청한 결과일 수 있어 회계연도중 실제 집행 가능한 사업량을 보수적으로 산정하여 소요예산을 적정규모로 편성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4-35〉 회계연도별 명시이월 발생 현황(2022~2020)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명 시 이 월			전 년 대 비	
		건 수	이월액 (B)	이월률(B/A)	증 감 액	증 감 률
2 0 2 2	14,929,457	677	325,906	2.18	253,457	349.8
2 0 2 1	12,162,448	137	72,449	0.6	8,225	12.8
2 0 2 0	11,255,880	129	64,224	0.5	△121,311	△65.0

※ 자료근거 : ① 각 회계연도 서울시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406 ('23. 4.21)

○ 명시이월을 발생사유별로 구분하면, ①**사업추진기간 부족**이 전체 명시이월액 (3,259억 600만원)의 59.5%, 1,940억 7,400만원, ②**사업추진 시 장애 발생** 20.7%, 677억 4,600만원, ③**사업비 부족** 4.0%, 130억 3,700만원, ④**기타** 15.6%, 510억 4,700만원으로 확인됨

〈표 4-36〉 명시이월 발생사유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계	① 사업추진기간부족	② 사업추진시 장애발생	③ 사업비부족	④ 기 타
건 수	677	445	85	60	87
이 월 액	325,906	194,074	67,746	13,037	51,047
구 성 비	100	59.5	20.7	4.0	15.6

- **사업추진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된 445건(1,940억 7,400만원)의 경우, 자체재원 사업 368건, 1,128억 1,800만원, 특별교부금 재원 사업 52건, 292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25건, 520억 2,500만원으로 확인됨

〈표 4-37〉 사업추진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재원구분	사업내역	건수	명시이월액
합계		445	194,074
자체재원	컴퓨터기반학업성취도평가지원(평가도구개발, 시스템구축) 등	368	112,818
특별교부금	목일중 배수로개선 및 보도블럭 포장 등	52	29,230
국고보조금	그린스마트스쿨시설비	25	52,025

- **사업추진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된 총 445건(1,940억 7,400만원) 중 99.3%, 422건(1,884억 9,700만원)은 '22년 8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추경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되어 설계·계약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된 것이며,
 -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원을 제외한 0.7%, 23건(55억 7,700만원)의 경우에는 '22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나, 설계 등 선행절차 미완료, 내진보강공사와 외벽공사, 석면공사 등 다른 공사와의 병행추진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됨
-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의 경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를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대규모 시설사업으로 사업비중 572억 9,400만원을 명시이월한 바,

- 설계 이전 각종 행정절차 등으로 당해연도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도 이월예산은 재정운영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추경을 통해 자체 재원이라도 경정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38〉 그린스마트스쿨 명시이월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예산구분	예산현액	명시이월액	예산구분
	계	73,313	57,294	
자체예산	소계	6,980	5,268	
	그린스마트스쿨 (BTL사업운영 제안비용보상비 ^{주1)})	1,741	1,741	본예산
	그린스마트스쿨 (지원사업분담금)	1,677	805	본예산
	그린스마트스쿨 (사전기획용역비)	1,440	1,286	본예산·추경2차
	그린스마트스쿨 (전환준비금)	1,564	1,016	추경2차
	그린스마트스쿨 (유현초 모듈러교사부대공사비 및 모듈러 임차료)	158	158	추경2차
국고보조금	소계	66,332	52,025	
	그린스마트스쿨설계비 (대광중외 11개교)	4,074	4,074	추경2차
	그린스마트스쿨시설비 (위례초외 11개교)	62,258	47,951	추경2차

주1) BTL사업운영 제안비용보상비, 개축타당성검토용역, 도시계획안화변경용역

- 중등교육과 소관 **컴퓨터기반 학업성취도 평가지원**은 서울학생들의 기초학력향상도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예산이나, 의회의 의결 취지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전용, 명시이월 등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지속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표 4-39〉 사업추진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번	예산구분	사업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명시이월액	이월률
1	국고보조금	미래학교추진단	그린스마트스쿨시설비(위례초)	14,030	12,649	90.0
2	국고보조금	미래학교추진단	그린스마트스쿨시설비(정의여고)	10,329	10,329	100.0
3	국고보조금	미래학교추진단	그린스마트스쿨시설비(영파여중)	6,495	6,495	100.0
4	국고보조금	미래학교추진단	그린스마트스쿨시설비(고대부중)	2,608	2,608	100.0
5	국고보조금	미래학교추진단	그린스마트스쿨시설비(대광중)	4,684	4,684	100.0
6	자체예산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본관 리모델링 (화장실개선 외 13개 공사)	3,484	3,457	99.0
7	국고보조금	미래학교추진단	그린스마트스쿨시설비(강서고)	3,396	3,311	98.0
8	자체예산	중등교육과	컴퓨터기반학업성취도평가지원 (평가도구 개발, 시스템구축)	3,000	2,900	97.0
9	국고보조금	미래학교추진단	그린스마트스쿨시설비(동성고)	2,286	2,286	100.0
10	국고보조금	미래학교추진단	그린스마트스쿨시설비(동성중)	2,044	2,044	100.0
11	자체예산	서부교육지원청	노후시설 및 사무공간개선	1,949	1,949	100.0
12	국고보조금	미래학교추진단	그린스마트스쿨시설비(광운중)	1,905	1,905	100.0
13	특별교부금	남부교육지원청	난곡중 화장실 보수 및 냉난방 개선	1,903	1,903	100.0
14	특별교부금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창덕여고 교사동 화장실 보수	1,762	1,762	100.0
15	자체예산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양강중 본관 외부창호 개선	1,735	1,704	98.0
16	자체예산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번동초 본관 외부창호 개선	1,726	1,726	100.0
17	자체예산	교육시설관리본부	미래산업과학고 교사동외부창호개선	1,630	1,630	100.0
18	자체예산	북부교육지원청	노후시설 및 사무공간개선	1,621	1,621	100.0
19	특별교부금	동부교육지원청	휘봉초 교사동 화장실 보수	1,582	1,582	100.0

※ 명시이월액 15억원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406 ('23. 4.21)

○ **사업추진 시 장애발생**에 따른 명시이월은 85건, 677억 4,6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중등교육과 **학생스마트기기보급** 사업은 지난 '21년도부터 추진된 '학생스마트기기 「디벗(Digital+벗)」 보급' 예산이나, '22년도 예산 현액 전액인 353억 8,200만원이 명시이월된 바,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3학년도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에게 1인 1스마트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22년도 본예산에 스마트기기 구매비 517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방식을 구매에서 임차로 변경하고자, 당초보다 △207억 1,400만원 감액하고 예산과목 또한 변경요청 한 것임

〈표 4-40〉 '22년도 「학생스마트기기보급」 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 상 학 년	예 산 액	비 고
'22년도	본 예산	2023학년도 중1학년	51,734	· 구매방식 · 기준단가 70만원
	2 회 추 경	2023학년도 중·고1학년 고등학교 교원 전체	△20,714	· 구매방식→임차방식 (학교회계전출금→ 운영비로 편성목 변경) · 기준단가 16만원(렌탈)
			35,382	· 임차방식→구매방식 - '22.10월, 운영비→ 유형자산으로 전용 - '22. 12월, 명시이월

※ 「원격교육지원」 사업 중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만 표시 (부대비용 제외)

- 그러나 임차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함을 사유로 또다시 지원방식을 임차에서 구매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스마트기기 보급예산 또한 운영비에서 유형자산으로 전용하여 사전이행절차 및 계약절차 지연으로 회계연도 말까지 사업예산을 집행하지 못함에 따라 예산현액 전액을 명시이월한 것으로 확인됨

-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경비의 사용대상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집행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바,
 - 집행기관은 예산편성시부터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동 사업의 경우에는 '22회계연도 한 해에만 스마트기기 지원방식을 '구매 → 렌탈 → 구매'로 수차례나 변경함으로써 사업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여 대규모 명시이월이 발생되었으며,
 - 지원방식 변경을 이유로 의회가 의결한 취지(렌탈)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구매)하기 위해 예산과목을 전용하여 의회의 심의를 형식화한 것은 물론 회계연도 말에는 계약 미집행에 따라 조달수수료 및 SW보급비 21억 9,3000만원이 불용된 바,
 -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형식화하는 예산 전용 사례 및 집행잔액과다, 명시이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신중히 수립하고 재정투입효과 분석, 중장기 예산확보방안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계획과 연동된 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여협력담당관 **마을결합형 학교공간 시설개선 지원(서울시 전입금)**은 학교내 유휴교실에 청소년 공간을 구축하고 학생주도형 방과후 활동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개선 예산으로 이수중 학교공간개선 시설사업비 18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임
 - 동 사업은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22년 3월, 전입될 당시 오류중, 방학중, 양서중, 추가 공모 2개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간개선사업 예산이었으나,

- '22년 10월,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울시교육경비 보조금 18억 5,000만원을 이수중학교의 시설개선에 사용하기로 변경한 바, 이수중 시설개선 설계과정에서 내진보강공사 우선 추진을 권고하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시설 안전 및 공사의 중복 투자 방지 등을 위해 내진보강 이후 공사를 실시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여 '23회계연도로 시설개선비를 명시이월 한 것임

〈표 4-41〉 사업추진 시 장애발생에 따른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번	재원	사업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명시이월액	이월률
1	자체예산	중등교육과	학생스마트기기보급	35,382	35,382	100.0
2	광역차입금	참여협력담당관	마을결합형 학교공간 시설개선 지원	2,000	1,850	93.0
3	자체예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이수초 강당검체육관 시설비	1,717	1,717	100.0
4	자체예산	북부교육지원청	공릉초 교사드라이비트해소	1,620	1,574	97.0
5	자체예산	동부교육지원청	중목초 외부창호개선	1,595	1,559	98.0
6	자체예산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동초 동관 및 본관 외부창호개선	1,419	1,419	100.0
7	자체예산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노후교사개축(상도유치원 시설비)	1,263	1,263	100.0
8	자체예산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동초 본관드라이비트 해소	1,220	1,220	100.0

※ 명시이월액 10억원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406 ('23. 4.21)

- **사업비부족**(60건, 130억 3,700만원)과 **기타**(87건, 510억 4,700만원) 사유로 명시이월이 발생된 사례중에서,

- **신남초 증개축시설비**는 노후 교사를 증개축하기 위해 '20년도에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21년도에는 재건축 설계용역을 진행하여 '22년도부터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단가 상승 및 모듈리교사 설치 소요비용의 증가 등으로 당초 중앙재정투자심사 대비 예산소요액이 30% 이상 증가하여 재심사(자체, 중앙)를 이행할 필요가 있어 예산현액(110억원)의 96.7%, 106억 3,3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임
- **사업비부족**을 사유로 명시이월한 사례중 '단가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을 추가확보 하여 집행예정', '공사비 추가확보 후 추진' 등의 명시이월건은 교육시설관리본부 30건, 66억 9,200만원, 남부교육지원청 5건, 6억 5,800만원으로 확인되는 바,
- 당해 회계연도내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나 공사비 부족 등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족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42〉 예산 추가확보 후 집행예정을 사유로한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소 관 부 서	세 부 사 업	건 수	명 이 월 시 액	명 시 이 월 사 유
계		35	7,35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 교 시 설 확 충	1	508	(동구여중) 단가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추가 확보 후 집행예정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29	6,185	(고 명 중 외 8 교) 공사비 부족분 확보 후 집행
서 울 특 별 시 남부교육지원청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5	658	(고원초, 당산초, 영등포초, 여의도여고) 공사예산 추가 확보 후 추진

- 아울러 **내진보강사업(재난특교잔액)**의 경우, '22년도 본예산에는 안전관리(내진보강) 시설사업비를 편성하여 운용한 바, '22년도에 계획된 내진보강 공사사업 중 4개교, 31억 4,000만원은 학교로 재배정하였으나, 설계기간 소요 등으로 공사시기가 지연되어 재배정하지 아니한 37억 2,000만원은 명시이월된 것으로 확인됨

〈표 4-43〉 사업비부족 및 기타사유 발생에 따른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번	재원	사업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명시이월액	이월률
1	자체예산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노후교사개축 (신남초 증개축시설비 1차)	11,000	10,633	97.0
2	자체예산	교육시설안전과	내진보강사업(재난특교잔액)	3,720	3,720	100.0
3	자체예산	교육시설관리본부	양천고 강당겸체육관(시설비)	2,925	2,925	100.0
4	자체예산	미래학교추진단	그린스마트스쿨 (BTL사업운영 제안비용보상비)	1,741	1,741	100.0
5	자체예산	교육시설관리본부	중대부고 본관외부창호개선	1,753	1,714	98.0
6	자체예산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가양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1,704	1,656	97.0
7	자체예산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양강초 덤웨이터철거, 엘리베이터 설치 및 학생식당 개선	1,622	1,574	97.0
8	자체예산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가칭)강현유 학교신설(시설비)	1,580	1,238	78.0

※ 명시이월액 15억원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406 ('23. 4.21)

(7) 사고이월 관련

① 사고이월 현황

- 관련 법령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등에 대해 다음 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22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예산현액(14조 9,294억 5,700만원) 대비 1.8%, 2,762억 3,7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2,236억 7,600만원) 보다 525억 6,100만원 증가하였고, 사고이월 건수도 직전회계연도 보다 283건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표 4-44〉 회계연도별 사고이월 발생 현황(2022~2020)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예 산 현 액 (A)	사 고 이 월			전 년 대 비	
		건 수	금 액 (B)	비율(B/A)	증 감 액	증 감 률
2 0 2 2	14,929,457	1,127	276,237,617	1.85	52,561	23.5
2 0 2 1	12,162,447	844	223,676,206	1.84	△59,255	△20.9
2 0 2 0	11,255,879	1,021	282,930,925	2.51	△18,975	△6.3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406 ('23. 4.21)

- '22회계연도의 경우, 시설사업비(1조 3,372억 7,600만원) 편성규모는 직전회계연도(1조 3,996억 5,500만원) 보다 △4.5%, 623억 7,900만원 감소하였으나, 사고이월률은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표 4-45〉 시설사업비 사고이월 현황(2022~2020)

(단위 : 백만원, 건, %)

구	분	2022	2021	2020
전체 사고이월	금액	276,237	223,676	282,931
	건수	1,127	844	1,021
시설사업비 사고이월	금액 (비율)	251,556 (18.8)	217,007 (16.2)	278,947 (30.7)
	건수	982	755	972
최종예산액중 시설사업비금액 (비율)		1,337,276 (100.0)	1,399,655 (100.0)	909,611 (100.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406 ('23. 4.21)

② 발생사유별 주요 사고이월

○ 사고이월 발생사유는 ①**계약기간 미도래**가 전체 사고이월액(2,762억 3,700만원)의 52.5%, 1,450억 8,600만원, ②**추경편성사업** 5.2%, 144억 4,300만원, ③**사전절차지연** 0.6%, 18억 2,700만원, ④**사업추진중 장애발생** 1.7%, 47억 6,300만원, ⑤**학사일정으로 인한 방학중 공사추진** 37.9%, 1,048억 8,200만원, ⑥**기타** 1.9%, 52억 3,500만원으로 제출된 바,

- '22회계연도에 발생한 사고이월의 90.4%가 ①**계약기간 미도래** 및 ⑤**학사일정으로 인한 방학중 공사추진**을 사유로 사고이월된 것으로 확인됨

〈표 4-46〉 2022회계연도 발생사유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계	① 계약기간 미도래	② 추경편성사업	③ 사전절차지연	④ 사업추진중 장애발생	⑤ 학사일정으로 인한 방학중 공사추진	⑥ 기타
건수	1,127	516	80	22	52	419	38
이월액	276,237	145,086	14,443	1,827	4,763	104,882	5,235
금액대비	100.0	52.5	5.2	0.6	1.7	37.9	1.9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406 ('23. 4.21)

○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라 발생한 사고이월은 516건, 1,450억 8,600만원으로 **둔촌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시설비**는 예산현액(132억 3,100만원)의 97.1%, 128억 4,200만원이 사고이월된 건으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학생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교사 증개축을 추진한 바,

- 둔촌초가 국책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 대상사업으로 '21년도에 선정되어 '22년 2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중앙투자 재심사와 설계용역을 완료('22.10)하고, '22년 12월, 공사계약 체결 및 착공을 하였으나, 준공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128억 4,2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확인됨

- **학교청소용역**의 경우, '22학년도 2학기 공립초 및 특수학교 교실(일반·특별) 관리실의 청소용역을 지원하고자 '22년 8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113억 4,200만원을 편성하여 '22년 9월부터 '23년 2월까지(6개월간)를 사업기간으로 하고, 11개 교육지원청에서 통합계약업무를 진행한 것임

■ 동 사업은 예산편성 시점부터 '23년도 2개월분 사업비에 대한 사고이월이 예상되었으나 결산결과 사업비의 62.2%, 70억 5,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1개 교육지원청 별로 입찰 및 계약을 함에 따라 계약체결 시점에 차이가 있어 교육지원청별 이월 규모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청소용역 기간을 당초 6개월에서 3~4개월로 축소된 상황에서 집행잔액도 35억 1,700만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다음연도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것은 집행기관과 시의회 모두가 일정부분 예산의 이월이 발생되어도 사업취지나 필요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의결한 결과에 해당되나, 동 사업과 같이 대규모 불용까지 발생시킨 것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 만큼이나 사업의 실행력 즉, 예산 집행 가능성까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공진초교실 및 기타시설 증축공사(시설비)**는 마곡개발지구 내 공진초의 학급증설에 따른 교실증축 등을 위해 '21년 11월, 공사 설계용역 완료후 '22년도 본예산에 67억 6,200만원을 편성하고, '22년 7월, 착공한 것이나, 준공시기('23년 7월) 미도래를 사유로 시설비의 71.4%, 48억 3,100만원 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확인됨

- **명일중 시설비**의 경우에도 해당 학교가 '25학년도에는 학급당 36.8명의 고도과밀(기준26명)학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19년도부터 증축을 추진한 바,
 - '22년도 본예산을 통해 교실증축을 위한 시설비 50억 5,500만원을 편성하여 '22년 1월, 착공하고, '22년 8월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공사비 추가 소요액(물가상승에 따른 단가 상승분 및 지하 매설물 이설비) 등 1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준공시기('23. 5) 미도래를 사유로 시설비(65억 5,500만원)의 50.4%, 33억 6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확인됨

- **장승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은 해당 학교가 학생식당이 미설치된 학교로서 지난 '21년도에 인근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19억 5,000만원을 기부받아 학생식당 및 특별교실 1개층 증축을 추진한 바,
 - '22년 본예산에 시설비 13억 5,700만원을 편성하고, '22년 8월, 추가경정예산중 시설비(30억 1,900만원)를 반영하여 '22년 1월, 착공하였으나, 준공시기('23. 9월) 미도래를 사유로 시설비(43억 7,700만원)의 86.6%, 37억 8,9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확인됨

〈표 4-47〉 계약기간 미도래 사고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사업부서	사업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이월률	사업기간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남부 교육지원청	둔촌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시설비	13,231	0	12,842	97.1	'22.12. 2 ~'23.12.31
학교환경 위생관리	체육건강 문화예술과	학교청소용역	11,342	766	7,058	62.2	'22.10. 6 ~'23. 2.28
학교 신증설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공진초 교실 및 기타시설증축 공사(시설비)	6,762	1,930	4,831	71.4	'22. 6.29 ~'23. 7.27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명일중 시설비	6,555	3,247	3,306	50.4	'22. 1.25 ~'23. 5.31
학교시설 확충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장승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증축	4,377	586	3,789	86.6	'22. 1.19 ~'23. 9.27
	남부 교육지원청	당서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2,153	0	2,153	100.0	'22.12.22 ~'23.12.31
학교급식 환경개선	북부 교육지원청	월계초 강당겸체육관	3,217	575	2,641	82.1	'22. 1.19 ~'23. 4. 5

※ 사고이월액 20억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

○ **추경편성 사업**을 사유로 발생된 사고이월은 80건, 144억 4,3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설계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된 바,

- 정보화기획 중 **클라우드 통합협업 플랫폼 구축**은 2010년 도입한 센메신저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업무시스템을 신규 구축하는 사업으로 '22년 7월, 정보화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2년 8월, 추가경정예산에 ①시스템 구축비(14억원)와 ②통합 플랫폼(SW) 구축비(7억원) 등 21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 당초 자체개발 예정이었던 ‘클라우드협업시스템(S/W)’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등록된 협업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전환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하여 '22년 12월,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①시스템 구축비 10억 1,300만원이 사고이월되고, ②소프트웨어 구매비 10억 3,2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은 '23년 5월 현재, 시스템(H/W) 및 협업플랫폼(S/W) 구매가 진행중으로 계약이 완료되는 7월 말 예산집행이 종료될 것으로 확인됨
- **한서초 모듈러 (임시) 교사 임차료**는 마포구 아현2구역 재개발 입주에 따른 학생 배치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임시(모듈러)교사를 임차하는 사업으로 '22년 8월, 추경예산으로 임차료 16억 8,800만원을 편성하고, '22년 12월 계약을 체결하여 16억 8,8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표 4-48〉 추경편성사업 사고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사업부서	사업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이월률	사업기간
학교시설 환경개선	교육시설 안전과	내진보강사업 (특별교부금) (강서양천)	2,742	15	2,373	86.5	22.12.20 ~23. 7. 1
정보보안 관	행정관리 담당관	소 계	2,100	60	2,045	97.4	
		클라우드 통합협업 플랫폼구축(HW)	1,035	-	1,013	97.9	22.12.30 ~23. 7.30
		클라우드 통합협업 플랫폼구축(SW)	1,065	60	1,032	97.0	22.12.7 ~23. 7.30
학교서 부 신 증 설	교육지원청	한서초 모듈러 (임시)교사 임차료	1,688		1,688	100.0	22.12.16 ~23. 2.24

※ 사고이월액 10억원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

○ **학사일정으로 인한 방학중 공사추진**에 따른 사고이월 419건, 1,048억 8,200만원중 **내진보강사업**과 **꿈담디자인혁신사업**은 26.1% 274억 4,400만원으로,

- 관련 법령에 근거한 국가시책사업인 내진보강사업은 관리대상건물중 내진보강대상(1,848동, 48.3%) 건물에 대하여 '29년도까지 내진보강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22년도의 경우, 본예산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53억원이 포함된 27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결산결과 178억 3,600만원이 사고이월되고, 그중 '방학중 공사추진을 이유'로 10건, 81억 4,4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표 4-49〉 내진보강공사 사고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사업부서	사업 내역	건 수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이월률	사고이월사유	
학교시설 환경개선 및 기관시설 유지관리	교육시설 안전과	소 계	29	30,886	3,912	17,836	57.7		
		내진 보강 사업		10	17,025	2,502	8,144	47.8	학사일정으로 인한 방학중추진
				15	10,156	1,177	6,751	66.5	계약기간미도래
				2	2,931	0	2,398	81.8	추경편성사업
				2	773	232	541	70.0	기관요청

※ '22년도 사고이월 발생 사업에 한정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406 ('23. 4.21)

- ①내진보강공사를 위해서는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설계 용역이 사전에 완료되어야 하고, ②설계결과 보강량이 클 경우 학교의 학사일정상 학기중 공사가 어려울 수 있으며, ③'22년도 첫 시행되는 석면해체·내진보강과 연계한 '통합형 학교단위 시설개선' 결과 추진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이월발생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내진보강사업은 연내집행이 곤란하여 사고, 명시,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월액과 불용액 등의 집행현황을 확인하여 소요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꿈담디자인혁신사업**은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일환으로 '22년도 본예산에 502억 6,000만원(서울시 전입금 73억원 포함)을 편성하여 158개교, 166건의 사업을 추진한 바,
 - 공모를 통해 대상교를 선정하고 건축가 매칭을 통해 사용자 참여 설계과정이 수반되어 '설계기간 소요', '겨울 방학중 공사' 등의 사유로 사업비 중 215억 2,600만원(서울시 전입금 45억 2,300만원 포함)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확인됨

- 학교시설사업의 경우, 학사일정을 고려한 방학중 공사 추진으로 당해 회계연도 내 예산을 전액 집행하는데 시간적 한계가 있어 사고이월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바,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단계에서 공사기간과 연도 내 집행가능액을 고려하여 이월액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①해당 회계연도 소요분에 한정하여 편성하고, ②하반기 추경을 통한 시설비 신규 편성을 최소화하는 등 자원운용의 효율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4-50〉 '22년도 꿈담교실 사고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사업부서	사 내 업 역	소 관 부 서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이월률	사고이월사유	
학 교 시 설 환 개 경 선	교 시 안 전 육 설 과	소 계	11개청	26,294	3,659	21,526	81.9	학사일정으로 인 한 방 학 중 추 진	
		동 부		1,755	334	1,376	78.4		
		서 부		2,257	36	2,142	94.9		
		남 부		2,864	120	2,623	91.6		
		북 부		2,610	944	1,665	63.8		
		중 부		2,877	231	2,344	81.5		
		(꿈담) 디자인 혁신사업	강동송파		3,097	752	2,223		71.8
		강서양천		2,127	35	2,021	95.0		
		강남서초		3,210	507	2,480	77.3		
		동작민락		1,969	323	1,623	82.5		
		성동공천		885	19	822	92.8		
		성북강북		2,639	352	2,202	83.5		계약기간미도래

※ '22년도 사고이월 발생 사업에 한정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406 ('23. 4.21)

(8) 순세계잉여금 관련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예정액 및 지방채 상환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의미하는 바,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직전회계연도(4,582억 800만원) 보다 8,632억원 2,200만원 증가한 1조 3,214억 3,000만원으로 제출됨

〈표 4-51〉 순세계잉여금 현황(2022~2020)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순 세 계 잉 여 금			다 음 연 도 예 산 반 영		
	금액(A)	전 년 대 비		본 예 산 (C)	비율(C/A)	추경예산 (예 정)
		증감액(B)	비율(B/A)			
2022	1,321,430	863,222	65.3	1,385,344	104.8	△63,913
2021	458,208	131,899	40.4	324,342	70.7	133,866
2020	326,309	△54,833	△14.3	280,604	85.9	45,705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을 1조 4,267억 9,700만원으로 전망하고, 전망분의 97.0%, 1조 3,853억 4,400만원을 '23년도 본예산에 미리 반영하였으나,
 - '22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결과, 당초 전망분 보다 △1,053억 6,700만원 감소된 1조 3,214억 3,0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된 바,
 - '23년도 본예산에 기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은 실제 결산결과보다 639억 1,300만원 초과 편성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3회계연도중 반드시 감액경정 하여야 할 것으로 지난 5월30일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639억 1,300만원 감액편성 요청된 것으로 확인됨

- 관련 법령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고 회신한 바,
 - '22년도에 대한 세입·세출 출납사무가 모두 완료되는 '23년 2월 10일 이후 '22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발생하는 결산상 잉여금을 필요시 '23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과목인 순세계잉여금에 편성할 수 있음
 -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관성적으로 당해 연도('22년도) 세입·세출결산 이전임에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결산상 세계잉여금 전망분을 다음연도('23년도) 세입예산에 미리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어 법령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 다만, 관련 법령의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 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비율을 정하고 있어 순세계잉여금 전망분이라 하여도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 관련 법령의 적용이 상이한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제도개선 요구 및 법령위반 요인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결산전 이입이라는 과도한 행위를 추진한 것은 반드시 개선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23년도 본예산에 미리 이입한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상 639억 1,300만원의 세입결손을 발생시킨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9) 지방채 관련

○ 지방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승인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22회계연도중 지방채 차입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지난 '21회계연도의 경우, 지방채 원금 전액(3,161억 7,600만원)과 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한 이자(64억 2,000만원)를 상환한 바, '22년도말 지방채 현재액은 없음

〈표 4-52〉 '20~'22년도 지방채 발행 및 상환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년도말 현재액	'21회계연도 증감				'21년 조기상환액	'22년도말 현재액
		발 행 (차입)	상 환				
			원 금	이 자	계		
합 계	316,176	-	316,176	6,420	322,597	306,298	-
2015 유치원신설및 교육환경개선	98,763	-	98,763	2,307	101,070	88,885	-
2016 교육환경개선	217,413	-	217,413	4,112	221,526	217,413	-

※ 자료근거 : 「'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5. 재무제표 (재무회계결산)

- **재무제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결산서를 구성하는 서류로서, 같은 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①**재정상태표**, ②**재정운영표**, ③**순자산변동표**를 작성하고 결산서에 포함시켜 제출되는 것임
- '22회계연도에 대한 재무회계 결산결과 총자산은 19조 1,958억 5,900만원이며, 총부채는 5,571억 2,4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8조 6,387억 3,4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14.9%, 2조 4,149억 4,600만원 증가한 것임
- '22회계연도 총수익은 13조 8,822억 6,800만원이며 총비용은 11조 4,673억 2,200만원으로 비용과 수익의 차액인 재정운영결과는 2조 4,149억 4,600만원 흑자로 검토되는 바,
 - 재정운영결과 수익이 비용보다 많고, 2016회계연도 이후 수익이 비용보다 많은 재정운영 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5-1〉 재무제표(요약)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재 정 상 태			재 정 운 영		
	총 자 산	총 부 채	순 자 산	총 수 익	총 비 용	운영차액
2022	19,195,859	557,124	18,638,734	13,882,268	11,467,322	2,414,946
2021	16,837,625	613,837	16,223,787	12,090,540	10,760,766	1,329,774
증 감 (증감률)	2,358,234 (14.0)	△56,712 (△9.2)	2,414,946 (14.9)	1,791,727 (14.8)	706,556 (6.6)	1,085,171 (81.6)

(1) 재정상태표

-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의 자산과 부채, 순자산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
- '22회계연도의 **총자산**은 19조 1,958억 5,9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6조 8,376억 2,500만원) 보다 14.0%, 2조 3,582억 3,400만원 증가함
- '22회계연도 **총부채**는 5,571억 2,4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6,138억 3,700만원) 보다 △9.2%, △567억 1,200만원 감소함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22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18조 6,387억 3,4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6조 2,237억 8,700만원) 보다 14.9%, 2조 4,149억 4,600만원이 증가함

〈표 5-2〉 재정상태표(요약)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	2021	증감액
자산	19,195,859	16,837,625	2,358,234
부채	557,124	613,837	△56,712
순자산	18,638,734	16,223,787	2,414,946

① 자산

○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며

- 전체 자산의 76.9%을 차지하는 **유형자산**은 직전회계연도보다 1,946억 8,600만원 증가한 14조 7,687억 4,800만원이며, **유동자산**은 직전회계연도 보다 2조 1,799억 5,000만원 증가한 4조 2,533억 3,900만원이나, **투자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무형자산**은 감소하여, 총 2조 3,582억 3,400만원이 증가한 19조 1,958억 5,900만원으로 제출됨

〈표 5-3〉 자산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2		2 0 2 1		증 감 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계		19,195,859	100	16,837,625	100	2,358,234
	유 동 자 산	4,253,339	22.2	2,073,389	12.3	2,179,950
	투 자 자 산	170,785	0.9	185,867	1.1	△15,081
	유 형 자 산	14,768,748	76.9	14,574,062	86.6	194,686
	무 형 자 산	116	0.0	130	0.0	△13
	기 타 비 유 동 자 산	2,868	0.0	4,177	0.0	△1,308

○ **유형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의 증감내용을 직전회계연도와 대비하여 검토하면,

- **유형자산**의 경우, 토지·건물·건설중인자산 등의 ⊕증가분(4,578억 5,300만원)과 감가상각비 및 처분액 등의 ⊖감소분(△2,631억 6,700만원)이 반영되어 직전회계연도 보다 구성비는 △9.7%포인트 감소하였으나, 직전회계연도(14조 5,740억 6,200만원) 보다 1,946억 8,600만원 증가된 것으로 제출됨

〈표 5-4〉 유형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	2021	증 감 액
계		14,768,748	14,574,062	194,686
⊕ 토	지	7,387,891	7,386,226	1,665
⊕ 건	물	8,788,199	8,649,065	139,134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3,375,956	△3,160,136	△215,820
⊕ 구	축 물	361,390	345,374	16,015
⊖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237,246	△225,913	△11,332
⊕	교육·연구용기자재	47,484	42,013	5,470
⊖	교육·연구용기자재감가상각누계액	△28,638	△26,784	△1,854
⊖	기계장치	297,327	330,756	△33,428
⊕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173,944	△211,447	37,502
⊕	도서	81,902	80,897	1,004
⊖	집기비품	1,516,251	1,516,983	△731
⊕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902,883	△1,016,249	113,365
⊕	차량운반구	44,246	41,973	2,272
⊕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23,448	△24,308	860
⊕	입	50,088	50,028	60
	박물관유물	8	8	0
⊕	건설중인자산	935,992	795,491	140,501
	기타의유형자산	83	83	0

- **유동자산**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익의 증가에 따라 ①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2조 2,454억 3,300만원, ②기금 예치금 증가에 따라 단기금융상품이 9,610억 6,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수 확대에 의한 미수채권 감소로 직전회계연도 보다 ③미수채권이 △3,823억 200만원 감소하였으며, 그 외 유동자산의 증감분이 반영되어 직전회계연도 보다 9.9%포인트, 2조 1,799억 5,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제출됨

〈표 5-5〉 유동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	2021	증 감 액
계		4,253,339	2,073,389	2,179,950
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265,769	20,335	2,245,433
②	단기금융상품	1,454,389	1,133,182	321,206
③	미수채권	452,422	834,725	△382,302
	미수채권대손충당금	△8,311	△4,279	△4,032
	미수금	7	1,940	△1,932
	단기대여금	15,081	9,249	5,831
	선금금	5,575	4,528	1,046
	선금비용	827	2,057	△1,230
	미수수익	7,983	4,186	3,796
	기타의 유동자산	59,595	67,461	△7,866

- 투자자산은 학자대여금 회수에 따른 장기학자대여금 감소로 직전회계연도 (1,858억 6,700만원) 보다 △150억 8,1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표 5-6〉 투자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	2021	증감액
	계	170,785	185,867	△15,081
	장기대여금	170,785	185,867	△15,081
	장기학자대여금	170,785	185,867	△15,081

② 부채

-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하며, ②장기차입부채가 전체 부채의 74.9%, 4,173억 3,000만원이고, ①유동부채는 22.9%, 1,277억 4,200만원, ③기타비유동부채는 120억 5,000만원으로 제출됨
- '22회계연도 총부채는 5,571억 2,400만원으로 민자리스 부채상환에 따라 직전회계연도(6,138억 3,700만원) 보다 △9.2%, △567억 1,200만원 감소한 것으로 검토됨

〈표 5-7〉 부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1		증감액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계	557,124	100.0	613,837	100.0	△56,712
	① 유동부채	127,742	22.9	133,335	21.7	△5,592
	② 장기차입부채	417,330	74.9	480,434	78.3	△63,104
	③ 기타비유동부채	12,050	2.2	67	0.0	11,983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를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면,

- **유동부채**는 ①미지급금(보조금반환)과 ②미지급비용(미지급이자)이 증가하였으나, ③선수금(사용료, 자산매각), ④유동성장기차입부채, ⑤기타의 유동부채(세외예수금)가 감소하여 직전회계연도(1,333억 3,500만원) 보다 △55억 9,200만원 감소한 1,277억 4,200만원으로 확인됨

〈표 5-8〉 유동부채 세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	2021	증감액
계		127,742	133,335	△5,592
①	미지급금	3,559	3,060	498
	보조금반환미지급금	3,559	3,060	498
②	미지급비용	79	-	79
	미지급이자비용	-	-	-
	기타미지급비용	79	-	79
③	선수금	3,510	3,582	△72
	임대료선수금	209	138	71
	사용료선수금	635	503	131
	자산매각선수금	2,665	2,941	△275
④	유동성장기차입부채	63,368	61,880	1,488
	유동성민자리스부채	63,368	61,880	1,488
⑤	기타의 유동부채	57,225	64,811	△7,586
	세외예수금	57,225	64,811	△7,586

- **장기차입부채**는 '22년도중 신규 민자리스(BTL)가 없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 부채가 감소한 바, 민자리스(BTL) 부채(631억 400만원)를 상환함에 따라 직전회계연도(4,804억 3,400만원) 보다 장기차입부채가 △631억 400만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 5-9〉 장기차입부채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	2021	증감액
계		417,330	480,434	△63,104
민	자 리 스 부 채	417,330	480,434	△63,104

- '22회계연도의 부채비율은 3.0%로 직전회계연도(3.8%) 보다 △0.8%포인트 감소한 바, '22회계연도중 민자리스부채(631억 400만원)를 상환하여 장기차입부채가 감소한 것으로 직전회계연도 보다 부채비율이 감소한 만큼 교육청의 재무구조가 직전회계연도 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사료됨

〈표 5-10〉 재정상태 변동 및 지방채 발행 현황(2022~2020)

(단위 : 백만원, %, %p)

회계연도	순 자산 (A)	부 채 (B)	부 채 비 율 (B/A)	전 년 대 비 증 감	지 방 채 발 행 액
2022	18,638,734	557,124	3.0	△0.8	-
2021	16,223,787	613,837	3.8	△3.0	-
2020	14,894,013	1,011,422	6.8	△0.6	-

○ 결과적으로 '22회계연도 유동비율은 직전회계연도(1,555.0%) 보다 1,774.6%포인트 증가한 3,329.6%로 검토되는 바,

- '22회계연도의 유동부채는 △55억 9,200만원 감소하였고, 유동자산은 기금예치금과 이전수익 등 현금 및 현금성자산 증가로 직전회계연도보다 105.1%, 2조 1,799억 5,000만원 증가하여 유동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단기채무에 대한 상환능력이 직전회계연도 보다도 높아진 것으로 사료됨

〈표 5-11〉 유동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2 (A)	2 0 2 1 (B)	증 감 액 (C = A - B)	증 감 (C / B)
유 동 자 산 (A)	4,253,339	2,073,389	2,179,950	105.1
유 동 부 채 (B)	127,742	133,335	△5,592	△4.2
유동비율(A/B)	3,329.6	1555.0		

③ 순자산

○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22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직전회계연도(16조 2,237억 8,700만원) 보다 14.9%, 2조 4,149억 4,600만원 증가한 18조 6,387억 3,400만원인 바,

- 직전회계연도 보다 유동자산과 유형자산이 2조 3,746억 3,600만원 증가하고, 장기차입부채도 △631억 400만원의 감소함에 따라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2) 재정운영표

○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회계실체가 수행한 사업의 원가와 회수된 원가 정보를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 '22회계연도 **총수익**은 13조 8,822억 6,800만원이며 **총비용**은 11조 4,673억 2,200만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조 4,149억 4,6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조 3,297억 7,400만원) 보다 81.6%, 1조 851억 7,200만원 증가한 것임

〈표 5-12〉 재정운영표(요약)

(단위 : 백만원, %)

과목	2022(A)	2021(B)	증감액 (A - B)	증감률
운영차액 (A - B)	2,414,946	1,329,774	1,085,172	81.6
수익 (A)	13,882,268	12,090,540	1,791,728	14.8
비용 (B)	11,467,322	10,760,766	706,556	6.6

○ **총수익**은 13조 8,822억 6,8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2조 905억 4,000만원) 보다 14.8%, 1조 7,917억 2,800만원 증가한 것임

- ①**이전수익**은 총수익의 98.5%, 13조 6,718억 2,4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1조 7,003억 2,200만원) 보다 1조 9,715억 100만원 증가한 바,

- 보통교부금 및 국세와 지방세 세수의 증가에 따라 법정전입금 전입규모도 증가하여, 중앙정부이전수익중 보통교부금수익은 직전회계연도(5조 7,881억 5,600만원) 보다 1조 8,014억 3,200만원 증가하고, 교육

비특별회계이전수익중 학교회계의전입금수익이 직전회계연도(2,384억 2,900만원) 보다 611억 9,800만원 증가하였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중 지방교육세전입금수익은 △855억 7,100만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②**자체수익**은 총수익의 61억 7,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228억 1,100만원) 보다 △166억 3,800만원 감소한 바, 코로나19의 완화로 인하여 수익자부담수익과 사용료수익은 직전회계연도(31억 3,500만원) 보다 17억 7,800만원 증가하였으나, '21회계연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등록금수익이 직전회계연도(184억 8,400만원) 보다 △184억 6,800만원 감소된 것으로 확인됨
- ③**기타수익**은 총수익의 1.5%, 2,042억 7,0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3,674억 600만원) 보다 △1,631억 3,500만원 감소한 바,
 - 기준금리 인상과 예산규모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이자수익이 직전회계연도(81억 3,600만원) 보다 274억 8,900만원 증가하고, 토지매각대금 증가로 인해 자산처분이익이 직전회계연도(127억 4,600만원) 보다 93억 5,100만원 증가하였음
 - 다만, 전기오류수정이익의 감소로 인해 기타수익중 기타의수익이 직전회계연도(1,704억 1,100만원) 보다 △1,468억 8,300만원 감소된 것으로 확인됨

〈표 5-13〉 재정운영표 수익 세부 내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 0 2 2 (A)		2 0 2 1 (B)		증 감 액 (A - B)
	금 액	구 성 비	금 액	구 성 비	
계	13,882,268	100.0	12,090,540	100.0	1,791,727
① 이 전 수 익	13,671,824	98.5	11,700,322	96.8	1,971,501
중 앙 정 부 이 전 수 익	8,638,058	62.2	6,761,993	55.9	1,876,064
지 방 자 치 단 체 이 전 수 익	4,715,029	34.0	4,680,198	38.7	34,831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이 전 수 익	299,627	2.2	238,429	2.0	61,198
기 타 이 전 수 익	19,109	0.1	19,701	0.2	△592
② 자 체 수 익	6,173	0.0	22,811	0.2	△16,638
등 록 금 수 익	15	0.0	18,484	0.2	△18,468
수 익 자 부 담 수 익	1,086	0.0	609	0.0	476
임 대 료 수 익	511	0.0	796	0.0	△285
사 용 료 수 익	3,828	0.0	2,526	0.0	1,301
수 수 료 수 익	315	0.0	394	0.0	△78
기 타 자 체 수 익	416	0.0	0	0.0	416
③ 기 타 수 익	204,270	1.5	367,406	3.0	△163,135
이 자 수 익	35,626	0.3	8,136	0.1	27,489
자 산 처 분 이 익	22,098	0.2	12,746	0.1	9,351
제 재 금 수 익	2,078	0.0	1,023	0.0	1,055
잡 수 익	120,940	0.9	175,088	1.4	△54,148
기 타 의 기 타 수 익	23,527	0.1	170,411	1.4	△146,883

※ '22회계연도 재무제표(재정운영표) 재구성, '22.12.31 기준

○ **총비용**은 직전회계연도(10조 7,607억 6,600만원) 보다 6.6%, 7,065억 5,600만원이 증가한 11조 4,673억 2,200만원으로,

- ④**보건급식**, ⑤**학교재정지원관리**, ⑥**평생교육**, ⑧**교육행정일반**, ⑩**인건비** 등은 직전회계연도 보다 6조 4,973억 7,600만원 증가하고, ①**인적자원 운용**, ②**교수학습활동지원**, ③**교육복지**, ⑨**재무활동** 등은 △5조 7,908억 2,0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제출되었음
- '22회계연도 재정운영표중 비용의 경우, ⑩**인건비**는 정책사업이 신설되었고, ⑦**직업교육**은 다른 정책사업내 단위사업으로 이동하거나 정책사업내 단위사업끼리 통합하는 등 직전회계연도와의 비교가 용이하지 않으나,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비용체계가 단순화되어 상대적으로 비교가 수월할 것으로 사료됨
- ①**인적자원운용**은 총비용의 0.5%, 614억 5,6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4조 9,444억 2,100만원) 보다 △98.8%, △4조 8,829억 6,4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인적자원운용**에서 ⑩**인건비**가 별도 단위사업으로 분리됨에 따라 직전회계연도 보다 감소한 것으로 검토됨
- ⑩**인건비**는 총비용의 45.1%, 5조 1,675억 3,200만원으로 기존 **인적자원운용**에서 단위사업이 분리되어 순증된 것으로 판단됨
- ③**교육복지**는 총비용의 7.0%, 8,059억 1,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조 4,724억 8,400만원) 보다 △6,665억 7,100만원 감소한 바, **교육복지**내 단위사업인 '급식지원'이 **보건급식** 정책사업으로 이동하여 감소된 것으로 검토됨
- ④**보건급식**은 총비용의 9.9%, 1조 1,295억 7,6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388억 700만원) 보다 713.8%, 9,907억 6,900만원 증가한 바, 교육복지(정책사업)의 단위사업인 급식지원이 이동되어 증가된 것으로 검토됨

- ②교수학습활동지원은 총비용의 5.8%, 6,605억 8,4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7,341억 8,100만원) 보다 △735억 9,700만원 감소한 바, 정책사업인 ⑦직업교육이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이동하여 단위사업인 ‘직업교육’과 ‘진로진학교육’에 포함되었으나 교수학습활동지원 내 2개 단위사업(학교평가관리, 검정고시관리)이 ⑧교육행정일반과 ⑥평생교육으로 이동되어 직전회계연도 보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 5-14〉 재정운영표 비용 세부 내용

(단위 : 백만원, %)

과목	2022 (A)		2021 (B)		증감액 (A - 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계	11,467,322	100.0	10,760,766	100.0	706,556
①인적자원운용	61,456	0.5	4,944,421	46.0	△4,882,964
②교수학습활동지원	660,584	5.8	734,181	6.8	△73,597
③교육복지	805,913	7.0	1,472,484	13.7	△666,571
④보건급식	1,129,576	9.9	138,807	1.3	990,769
⑤학교재정지원관리	2,249,532	19.6	2,102,014	19.5	147,518
학교시설여건개선	502,185	4.4	457,592	4.3	44,593
⑥평생교육	31,699	0.3	24,245	0.2	7,453
⑦직업교육	0	0.0	857,734	0.0	△857
⑧교육행정일반	136,903	1.2	120,352	1.1	16,550
기관운영	33,081	0.3	27,507	0.3	5,573
⑨재무활동	42,472	0.4	209,302	1.9	△166,830
⑩인건비	5,167,532	45.1	0	0.0	5,167,532
기타비현금지출비용	646,384	5.6	528,999	4.9	117,385

(3) 순자산변동표

○ 순자산변동표는 한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22회계연도의 기말순자산은 18조 6,387억 3,4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6조 2,237억 8,700만원) 보다 14.9%, 2조 4,149억 4,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제출됨

〈표 5-15〉 순자산변동표(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2 (A)		2 0 2 1 (B)		증 감 액 (A - B)
		금 액	구 성 비	금 액	구 성 비	
기 말 순 자 산		18,638,734	100.0	16,223,787	100.0	2,414,946
고 정 순 자 산						
	I. 전기이월고정순자산	14,031,747	75.3	13,286,505	81.8	745,241
	II. 고정순자산의증가	687,459	3.7	1,211,343	7.5	△523,884
	III. 고정순자산의감소	431,157	△2.3	466,102	2.9	34,944
	IV. 차기이월고정순자산	14,288,048	76.7	14,031,747	86.4	256,301
특 정 순 자 산						
	I. 수정후전기이월특정순자산	397,330	2.1	61,938	0.4	335,392
	II. 운 영 차 액	1,432,463	7.7	335,392	2.1	1,097,070
	III. 특정순자산의증가	0.3	0.0	1,028	0.0	△1,028
	IV. 특정순자산의감소	32,149	△0.2	1,028	0.0	△31,121
	V. 차기이월특정순자산	1,797,644	9.6	397,330	2.5	1,400,313
일 반 순 자 산						
	I. 수정후전기이월일반순자산	1,794,709	9.6	1,545,568	9.5	249,140
	II. 운 영 차 액	982,483	5.3	994,382	6.2	△11,899
	III. 일반순자산의증가	431,157	2.3	466,102	2.9	△34,944
	IV. 일반순자산의감소	655,310	△3.5	1,211,343	7.5	556,033
	V. 차기이월일반순자산	2,553,040	13.7	1,794,709	11.1	758,331

○ 순자산은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하는 바,

- 고정순자산은 전체 순자산의 76.7%, 14조 2,880억 4,8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4조 317억 4,700만원) 보다 2,563억 100만원 증가함
 - 유형자산 증가에 따른 교육연구용기자재·기계장치·집기비품이 증가하였으나 토지·건물 등의 감소 및 민간리스부채의 순감소로 인하여 ‘고정순자산의증가’ 항목은 직전회계연도(1조 2,113억 4,300만원) 보다 감소된 △5,238억 8,400만원이며, ‘고정순자산의감소’ 항목은 감가상각비(△3,985억 1,600만원)에 따른 감소로 직전회계연도(4,661억 100만원) 보다 △349억 4,4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제출됨
- 특정순자산은 전체 순자산의 2.1%, 1조 7,976억 4,4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3,973억 3,000만원) 보다 1조 4,003억 1,300만원 증가한 바,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에 대한 기금전출로 기금적립액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
- 일반순자산은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것인 바, 전체 순자산의 13.7%, 2조 5,530억 4,0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조 7,947억 900만원) 보다 7,583억 3,100만원 증가함

〈표 5-16〉 순자산의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 (A)	2021 (B)	증감액 (A-B)	증	감	현	황
	기 말 순 자 산 (① + ② + ③)	18,638,734	16,223,787	2,414,946				
	고 정 순 자 산	14,288,048	14,031,747	256,301				
	I. 전가월고정순자산	14,031,747	13,286,505	745,241				
	II. 고정순자산의증가	687,459	1,211,343	△523,884	· 토지			△1,290억원
					· 건물			△1,250억원
					· 구축물			△27억원

구	분	2022 (A)	2021 (B)	증감액 (A-B)	증 감 현 황
					· 교육연구용기자재 18억원 · 기계장치 7억원 · 도서 △5억원 · 집기비품 653억원 · 차량운반구 34억원 · 입목 △1억원 · 건설중인자산의 순증가 △229억원 · 민간리스부채의 순감소 △3,146억원
Ⅲ.	고정순자산의감소	431,157	466,102	△34,944	· 토지 △207억원 · 건물 △486억원 · 구축물 △7억원 · 교육연구용기자재 2억원 · 기계장치 6억원 · 도서 3억원 · 집기비품 29억원 · 차량운반구 △0.8억원 · 입목 △1억원 · 감가상각비 312억원
Ⅳ.	차이월고정순자산 (I + II - III) ①	14,288,048	14,031,747	256,301	
	특 정 순 자 산	1,797,644	397,330	1,400,313	
Ⅰ.	수 정 후 전 기 이월특정순자산	397,330	61,938	335,392	
Ⅱ.	운 영 차 액	1,432,463	335,392	1,097,070	
Ⅲ.	특정순자산의증가	0	1,028	△1,028	
Ⅳ.	특정순자산의감소	32,149	1,028	31,121	·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 건설중인자산 34억 2,400만원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 건설중인자산 287억 2,500만원
Ⅴ.	차이월특정순자산 (I + II + III - IV) ②	1,797,644	397,330	1,400,313	
	일 반 순 자 산	2,553,040	1,794,709	758,331	
Ⅰ.	수 정 후 전 기 이월일반순자산	1,794,709	1,545,568	249,140	
Ⅱ.	운 영 차 액	982,483	994,382	△11,899	
Ⅲ.	일반순자산의증가	431,157	466,102	△34,944	· 고정순자산의 감소
Ⅳ.	일반순자산의감소	655,310	1,211,343	△556,033	· 고정순자산의 증가
Ⅴ.	차이월일반순자산 (I + II + III - IV) ③	2,553,040	1,794,709	758,331	

6. 성과보고서 검토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은 성과보고서를 결산서의 구성서류로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고,
 - 성과보고서의 경우에는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2회계연도 결산서에 포함된 성과보고서는 5개 전략목표, 15개 성과목표, 88개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달성도에 관한 것으로, 성과달성률에 따른 등급별 현황을 검토하면 88개 성과지표수 중 ①4개 지표(4.6%) **초과달성**, ②78개 지표(88.6%) **달성**, ③6개 지표(6.8%) **미달성**으로 제출됨

〈표 6-1〉 성과보고서 총괄현황

(단위 : 개, %)

전략목표	성과목표수	성과지표수	성과지표 성과달성도			달성률 ^{주4)}
			초과달성 ^{주1)}	달성 ^{주2)}	미달성 ^{주3)}	
5	15	88 (100.0)	4 (4.6)	78 (88.6)	6 (6.8)	93.2

- ※ 주1)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지표수
- 주2)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지표수
- 주3)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수
- 주4) '초과달성률'과 '달성률'의 합계

- '22회계연도 초과달성 및 미달성 성과지표 현황을 검토하면,
 - '고화소 CCTV 교체비율' 성과지표는 2개 회계연도 연속 초과달성, '민방위대피훈련 참여 실적' 성과지표는 2개 회계연도 연속 미달성으로 확인되는 바,

- ‘고화소 CCTV 교체비율’(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경우, ’22회계연도중 15억 3,500만원을 319교에 지원하여 ’22년도말에는 200만화소 미만 CCTV 비율이 ’21년 대비 전체의 9%에서 4.3%로 △4.7%p 감소하여 고화소 CCTV 비율 95.8%를 달성하였기에, ’23년부터는 성과지표에서 제외하고, 성과지표 원래의 목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학교안전인프라 구축’을 달성할만한 다른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6-2〉 ‘고화소 CCTV 교체비율’ 성과 달성도

(단위 : %)

측 정 산 식	달 성 률	
	’22년	’21년
(100만 화소 미만 CCTV 대수/전체 CCTV 대수)×100	177.50	166.67

- ‘민방위대피훈련 참여 실적’(총무과)의 경우, ’22년도중 코로나19로 인해 전국단위 민방위 대피훈련 전면취소로 인하여 성과달성 측정이 불가능하여 ‘미실시’한 것으로 성과를 보고하고 있고, ’21회계연도중에도 동일한 사유로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코로나19의 종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과달성도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

〈표 6-3〉 ‘민방위대피훈련 참여 실적’ 성과 달성도

(단위 : %)

측 정 산 식	달 성 률	
	’22년	’21년
(누적 실시 학교수/누적 전체 학교수)×100	미실시	미실시

○ 교육부의 관련 기준에 따라 성과보고서 작성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 성과지표 목표치를 과도하게 초과달성 하거나 달성하지 못한 경우 주요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원인분석**을 하도록 하고,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기술하여 차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을 위해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향후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초과달성 및 미달성한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을 충실히 함으로써 이에 따른 향후 개선사항 등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차기 성과계획 수립 시 성과지표의 적정성과 목표수준의 합리성이 모두 확보되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6-4〉 초과달성 및 미달성 성과지표 현황

부 서 명	성 과 지 표 명	
	초 과 달 성 ^{주1)} (4개)	미 달 성 ^{주2)} (6개)
대 변 인	·주요 매체별 공익광고 건수	
총 무 과		·(미실시)민방위대피훈련 참여 실적**
참여협력담당관		·학부모 교육 만족도
교 육 혁 신 과	·(신규)자율형 사립고 일반고 전환 지원 대상 확대	·초·중학교 무상 교과용도서 재고율
중 등 교 육 과	·독서토론·글쓰기 교육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인원	
민 주 시 민 생활 교육 과	·고화소 CCTV 교체비율*	
체 육 건 강 문 화 예 술 과		·(신규)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특 수 교 육 과		·특수교육보조인력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만족도
교육연구정보원		·(신규)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사용자 증가율

※ 주1)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지표수

주2)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수

※ * 지표의 경우 2회계연도(2020~2021) 이상 연속 ‘초과달성’

** 지표의 경우 2회계연도(2020~2021) 이상 연속 ‘미달성’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 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승인(2023. 6. 27.)

VII. 시정요구 및 주의사항

1

결산결과 총괄표

시정 요구	주의	개선	합계
14	4	5	23

2

시정요구 등

연번	내용	시정 및 주의·개선 사항	비고
1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과목 징수·수납 부적정	<시정요구> · 자치단체간이전수입(4억 1,600만원)을 자체수입중 분담금으로 잘못 징수	세입·세출결산

연번	내용	시정 및 주의·개선 사항	비고
2	전년도이월금 과목 징수·수납 부적정	<p><시정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사용잔액(30억 6,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잘못 징수 	세입·세출결산
3	불용액 발생사유 구분 부적정	<p><시정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유보금의 불용액 발생사유를 “예비비”가 아닌 “예산절감”으로 임의처리 	세입·세출결산
4	인건비, 이용 예산 집행 및 예산 편성후 처리 부적정	<p><시정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추경에 증액편성(26억원)하였으나, 법정부담금으로 이용한 후 경정하지 않아 증액편성된 명예퇴직수당 전액 불용 	세입·세출결산
5	인건비 불용액 최소화 방법 개선	<p><개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불용액 발생 관련 개선 	세입·세출결산
6	교육사업비 예산 초과집행에 따른 부적정	<p><시정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세부사업(누리과정지원) 예산을 초과지출하여 의결결과 및 「지방회계법」 제29조 위반 	세입·세출결산
7	시설사업비 예산 중복 편성 주의	<p><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사업으로 예산 중복 편성 주의 	세입·세출결산
8	전용 기준 미준수	<p><시정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 내용과 다르게 ‘학생스마트 기기보급’(310억 2,000만원)을 임차에서 구입으로 변경하여 예산 전용 의결 내용과 다르게 ‘클라우드협업시스템(S/W)’(7억원)을 자체개발에서 구입으로 변경하여 예산 전용 	세입·세출결산

연번	내용	시정 및 주의·개선 사항	비고
9	명시이월로 비효율적 운용 주의	<p><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 취지와 다르게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지원’ (29억원) 예산 전용 및 명시이월 등 비효율적 운용 	세입·세출결산
10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시기 부적절	<p><시정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회계연도 결산전에 순세계잉여금을 ’23년도 본예산에 미리 이입하여 세입결손 (63억 9,100만원) 발생 	세입·세출결산
11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 관련 법령 위반요인 개선	<p><개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법 시행령」 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의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적용이 상이하여 제도개선 필요 	세입·세출결산
12	성과보고서 기준 개선	<p><개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계획 수립 시 성과지표의 적정성과 목표수준의 합리성이 확보되도록 개선 	세입·세출결산
13	예비비 사용결정 검토기준 판단 부적절	<p><개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비 사용결정 검토시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필요성, 적정성 등 측정 검토기준 점검 및 개선 	예비비 결산
14	예비비 사용결정시 이월가능성 주의	<p><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비 사용결정시 예비비의 이월가능성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주의 	예비비 결산
15	기금결산 총괄 작성 기준 미준수	<p><시정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 결산중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만 별도의 단일의안으로 제출한 것은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 미준수 	기금 결산
16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징수·수납 부적절	<p><시정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이월금(17억 7,600만원)을 예치금회수로 잘못 징수·수납 	기금 결산

연번	내용	시정 및 주의·개선 사항	비고
17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집행잔액 관리 부적정	<p><시정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없는 예치금 집행잔액 (10억 9,100만원) 발생 	기금 결산
18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 절차 미준수	<p><시정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결산 미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미준수 	기금 결산
19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p><시정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위반하여 기금결산 보고 절차 미준수 	기금 결산
20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서 내용 작성 주의	<p><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서중 지출계획액(2,500만원) 오기 	기금 결산
21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관련 절차 미준수	<p><시정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1억 9,000만원)과 지출 변동에도 기금운용계획변경 미조치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미준수 	기금 결산
22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 지침 이해도 향상 개선	<p><개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말 예치금 조정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지 않도록 개선 	기금 결산
23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 절차 미준수	<p><시정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사업지출계획액의 20%를 초과한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미준수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921
----------	-----

제출연월일: 2023년 5월 30일

제 출 자: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재정활동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원)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세계잉여금 (C)=(A)-(B)
14,633,332,034,000	14,929,457,130,130	14,738,177,595,953	12,811,043,418,025	1,927,134,177,928

나. 결산상 잉여금 현황

(단위 : 원)

세계잉여금 (A)	다음연도 이월액(B)				보조금 반납예정액 (C)	순세계잉여금 (D)=(A)-(B)-(C)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1,927,134,177,928	602,143,733,400	325,906,116,610	276,237,616,790	0	3,559,637,506	1,321,430,807,022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